

대전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요 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고용창출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감, 소위 신경제로 대표되는 절제되지 않은 후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에 대한 치유 기제 등의 이유로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
-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2007.7.1.)을 제정하고 각종 육성사업을 전개 하고 있음
 -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음.
- 대전시에서도 2009년 10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2년 7월 대전사회적기업지원전담조직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설치되는 등 지원사업이 본격화 하고 있음
 - 2011년 2월 시청 로비에 입점한 건강카페는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 는 모토로 주목을 받고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대전시는 향후 2014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개, 일자리 창출 2,000명을 목표로 사회적 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진행 중에 있음
- 본 연구는 2012년 수립예정인 대전사회적기업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에 앞서 대전시 사회적 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연구임.
-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외의 타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전시 사회적기업육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둘째, 대전시 및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지역내 유관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방향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함
- 셋째, 대전시 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 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인증시의 애로사항, 사업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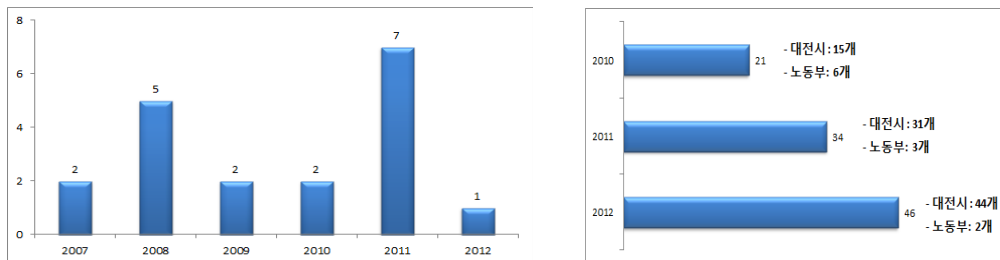
2. 대전시 사회적기업 현황

- 2012년 9월 신규인증업체(공감만세)포함 사회적기업 19개사, 예비사회적기업 46개사
 - 전국(699개) 대비 2.7%

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계
		일반	대학	부처형	
운영 업체수	19	40	4	2	65

연도별 대전지역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인증 현황



- 업종별로는 환경이 17.2%로 가장 많고, 문화예술관광이 12.5%로 다음. 기타가 53.1%차지
- 현재 사회적기업의 전체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인증 당시 보다 22% 감소한 64.4%로,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 지원 종료에 따른 인력감축 결과로 해석됨
- 또 전체 고용인원 886명 중 71%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고용형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일자리 창출에 시사하는 바가 큼.

3. 대전시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

- 고용유형은 사회적기업이 외국인 유급 근로자가 없고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높는데 반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비율이 낮고 기타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외국인 유급 근로자도 일부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채용 경로는 사회적기업이 대학·지자체·정부 지원기관을 통한 구인이 가장 많고, 온라인 인터넷 구직 홈페이지나 지인·직원의 추천 등을 골고루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인이나 직원의 추천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필요한 물품의 구입지역 및 판매지역은 양쪽 모두 반 정도가 대전시 지역 내였고, 다만 구입처의 유형은 일반업체로 유사한 구조를 보였으나 판매처에 있어 사회적기업은 일반업체,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이 유사하게 나타나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일반업체가 반 정도를 차지하여 폭이 크게 나타나, 사회적기업의 판매처 다변화가 진전된 것으로 판단됨
- 유통망은 양쪽 모두 직접판매가 반이상을 차지하나, 사회적기업은 타 사회적기업 혹은 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용이 온라인 쇼핑몰 보다 많은데 비해 예비사회적기업은 타 사회적기업 혹은 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전문유통업체의 이용은 양쪽 모두에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지원과 관련하여 양쪽 모두 대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와 자치단체(대전광역시 및 구청)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유형으로는 대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교육행정지원이, 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는 물품판매지원과 자금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치단체는 자금지원이 높게 나타나고, 물품판매지원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지원받은 사업의 만족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교육/연수프로그램참여지원, 노무관리 지원 순인데 비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 지원, 노무관리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의 순으로, 사회적기업에 비해 사업개발비 지원 부분의 만족도가 경영자문 및 판

로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이 특징적임

-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요구수준이 높은 마케팅판로개척, 우선구매, 금융대출, 공공구매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체 운영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판로개척(시장개척)이 뚜렷하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판로개척(시장개척)과 함께 인력수급, 복잡한 행정절차, 사업장 및 사업 공간 확보 등의 전반에 걸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지원에 대해 양쪽 모두 판로처 개발 등 마케팅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우선위탁 제공 등 판로확보에 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적기업지원기관(대전경제통상진흥원, 풀뿌리사람들)에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지원사항 또한 판로처 개발 등 마케팅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나, 그 외에도 세무와 노무, 회계에 대한 지원과 민간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원과 사업경영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제공에 대한 수요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계획은 대다수 예비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으며 시기는 2013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국내외 사회적기업 육성사례 분석

- 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및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의 수립
- 국내외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은 최소 5개년에서 20년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수립됨
- 또한 실태조사부터 계획의 구상시에 종합적인 사업 계획의 토대 하에 지자체, 각종 지원 기관, 사회적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등을 참여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왔음.
- 특히 오사카부는 사회적기업을 일시적인 유행이나 흐름이 아닌, 지역복지 개

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사회적기업가 지원의 기반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제 1기와, 본격적 기반 조성 및 사회적기업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 2기로 나누어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고 있음

○ 제 1기 사업 수행 초기에 실시한 다양한 시범 사업을 통해 2기에서는 정책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식을 찾는 데 성공함.

② 사회적기업 뿐이 아닌 사회적기업가에 초점을 맞춘 지원

○ 지역복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적기업가 혹은 예비사회적기업가를 중개기관과 연계시스템을 통해 관심있는 기업이나 시민이 직접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식이나, 중간지원기관의 추천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검증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의 현재 성과보다 향후 사회적기업가가 지역의 어떤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는 방식은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③ 지원 경험과 전문성 보유한 다양한 민간 지원기관 발굴, 활용

○ 대부분의 지역사례에서 지원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다양한 민간 지원기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지원 전문기관 및 사회적기업 연합체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 연관 조직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 지원기관의 전문성이 사회적기업생태계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단체들이 중간 지원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직간접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음.

- ④ 시민적 참여기반 조성 및 다양한 지역자원 동원
- 사회적기업생태계 구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임. 오사카부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기업가의 아이디어에 대해 시민들이 기부하도록 중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주류경제 전문가들이 경영자문등에 연계되도록 지역자원은행을 운영하거나 지역기금을 조성·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연계가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성장기반이 다져짐

5. 대전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개별 사회적기업의 판로, 자금 및 고용지원 등 육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조직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구축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시장경쟁력과 사회적목적 실현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공공재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민친화적인 사회서비스 문제를 민간의 비즈니스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하고, 해체되어 가는 가족공동체 혹은 소단위 지역공동체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며, 질 높은 고용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문제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본격화 할 때까지 정부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부분의 직접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이 가능한 생태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 따라서 개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기업 지원 인프라의 구축과 생태계 구축에 우선적 투자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첫째, 지역의 사회적기업 실태와 수요파악, 지역맞춤형 특성화된 모델의 개발 등 사회적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한 분석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임. 사회적기업육성이 활발한 영국의 사례와 같이 지역연구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를 지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사회적기업육성계획(5개년계획)이 정기적

으로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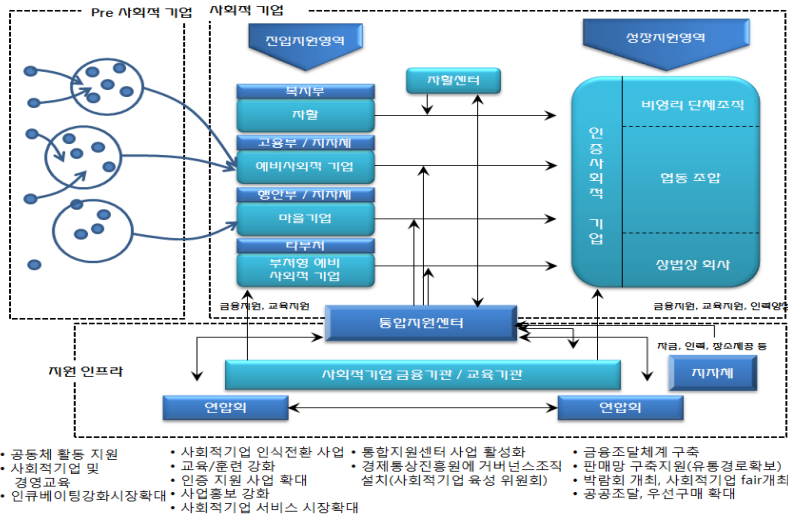
둘째, 공공서비스분야의 스크리닝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담당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사업분야)을 분석하고 점진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할 것임. 민간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체 결연행사의 확대, 사회적기업 페어 및 박람회 개최 활성화, 각종 유통경로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함. 가장 우선적으로는 열악한 유통환경을 개선을 위해 온라인마켓과 오프라인 마켓개설이 필요함.

셋째, 예비사회적기업 혹은 마을기업 지정 이전 단계에서의 인큐베이션 기능강화가 필요함

넷째, 사회적 기업지원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거버넌스체계 확보가 필요함. 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와 인증기업지원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과 사회적기업을 대표하는 자체 단체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체계를 확보하고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임

다섯째, 사회적기업의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조달체계 구축,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선사항을 도출해야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기업 생태계 구조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내용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6
1.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6
2. 연구의 구성 및 추진체계	6
제2장 이론적 고찰	11
1. 사회적기업의 개념	11
2. 사회적기업의 가치	15
3. 사회적기업의 유형 및 조직	18
4.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24
5.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변화	27
제3장 사회적 기업 현황	35
1. 전국 사회적 기업 현황	35
2. 대전시 사회적기업 현황	40
3. 대전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실태조사	46
제4장 지역별 사례 검토	77
1. 충남	77
2. 서울	78
3. 영국 브리스틀시	81

4. 캐나다 퀘벡 지역의 사회적 경제 정책	86
5. 일본 오사카부 사례	88
6. 사례를 통한 시사점	94
제5장 대전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99
1. 기본방향	99
2. 5개년계획의 수립과 거버넌스의 구축	100
3. 사회적 기업 시장확대	102
4. Pre사회적기업 단계의 지원	103
5.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체계의 정비	104
6.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시스템의 구축(자금조달체계 구축)	107
7.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기업 제도개선	109
참고문헌	110
부록1 : 설문조사표	113
부록2 : 사회적기업 토론회 개최 결과	128
부록3 : 사회적경제 연구회 개최 결과	131

그림 목차

<그림 1-1> 본 연구의 추진체계	7
<그림 2-1> 사회적기업의 개념	11
<그림 2-2> 사회적 기업의 관련 주체	14
<그림 2-3> 사회적 기업의 가치	16
<그림 2-4>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상의 사회적기업유형	18
<그림 2-5> 사회적기업유형별 사회적목적	18
<그림 2-6> 국가, 시장 및 사회적 경제	25
<그림 2-7> 사회적경제의 구현구조	25
<그림 2-8> 사회경제의 영역	26
<그림 2-9>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비영리조직의 범위	27
<그림 3-1> 지역별 사회적기업 현황	35
<그림 3-2> 연도별 인증 업체 수	36
<그림 3-3> 업종별 비중	39
<그림 3-4> 사업별 증감비율	42
<그림 3-5> 연도별 대전지역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43
<그림 3-6> 대전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44
<그림 3-7> 대전시 구별 사회적·예비사회적 기업 현황	44
<그림 4-2>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비전, 목표, 중점분야	79
<그림 4-3> 사회적경제 생태계 체계도	79
<그림 4-4> 단계별 추진목표	79
<그림 4-6>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기반 조성 사업 구상도	92
<그림 4-7> 오사카부의 지원기관 및 커넥터 기관을 통한 사회적기업가 지원 구상도 ..	93
<그림 5-1> 사회적 기업 생태계 구조	101

표 목 차

<표 2-1> 사회적기업과 비영리기관, 영리기업의 비교	11
<표 2-2> 사회적기업의 개념 비교	12
<표 2-3> 미국, 유럽, 한국의 사회적기업 비교	13
<표 2-4>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	20
<표 2-5> (지역형)사회적기업과 농식품형예비사회적기업 비교	21
<표 2-6>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의 비교	22
<표 2-7> 한국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24
<표 2-8>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비영리조직 비교	27
<표 2-9> 한국 사회적경제 역사	28
<표 3-1> 지역별·연도별 인증 현황(2012. 6. 25 현재)	37
<표 3-2> 업종별 인증업체 수	39
<표 3-3> 대전시 육성목표(1)	41
<표 3-4> 대전시 육성목표(2)	41
<표 3-5>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현황	41
<표 3-6> 재정지원 실적현황	42
<표 3-7> 사회적기업 현황	43
<표 3-8>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43
<표 3-9> 대전시 사회적·예비사회적 기업 업종별 비율	45
<표 3-10> 고용인원 현황	45
<표 3-11> 취약계층의 유형	46
<표 3-12> 목적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사회적기업 18개, 예비 40개)	46
<표 3-13> 대전시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조사 설계표	47
<표 3-14> 조사항목 및 내용	48
<표 3-15>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인증시기	49
<표 3-16>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49
<표 3-17>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주요상품 및 서비스	50

<표 3-18>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총매출액	50
<표 3-19>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50
<표 3-20>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노동부 인증시기	51
<표 3-21>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51
<표 3-22>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설립목적	52
<표 3-23>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고용현황	52
<표 3-24>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2~3년 이후 고용전망	53
<표 3-25>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인력채용경로 (복수응답)	53
<표 3-26>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지역 범위별 물품 구입 및 판매처	54
<표 3-27>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물품 또는 서비스 판매 유통망	54
<표 3-28>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기관 및 단체의 현재 도움 유형(복수응답)	55
<표 3-29>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지원받은 지원사항별 만족도	56
<표 3-30>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인증신청시 장애 요인	56
<표 3-31>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정의 효과(복수응답)	57
<표 3-32>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	57
<표 3-34> 대전시 예비사회적 기업의 인증시기	59
<표 3-36> 대전시 예비사회적 기업의 주요상품 및 서비스업	59
<표 3-40> 대전시 예비사회적 기업의 사업유형	61
<표 3-41> 대전시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목적	62
<표 3-42> 대전시 예비사회적 기업의 고용유형	62
<표 3-43>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2~3년 이후 고용전망	63
<표 3-44>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인력채용 경로	63
<표 4-45>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물품 구입 및 판매처	64
<표 3-46>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통망	64
<표 3-47>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기관 및 단체의 현재 도움 유형(복수응답) ..	65
<표 3-48>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정 후 지원받은 지원사항별 만족도 ..	66
<표 3-49>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신청시 장애 요인	66
<표 3-50>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정 효과	67
<표 3-51>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67

<표 3-52>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방정부(대전광역시) 혹은 중앙정부 우선 지원 사항(복수응답)	68
<표 3-53>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지원기관(대전경제통상진흥원, 풀뿌리사람들) 지원수요(복수응답)	69
<표 3-54>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전환계획	69
<표 3-56>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전환유형	70
<표 3-57>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전환이유	70
<표 4-1> 충남 사회적경제육성 4대과제와 추진사업	77
<표 4-2> 4대 중점분야별 21개 핵심과제 추진	80
<표 4-3> 연차 보고서에 따른 연대협동조합 자료	8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음. 그 이유는 첫째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둘째 고용창출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감, 셋째 소위 신경제로 대표되는 절제되지 않은 후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에 대한 치유 기제 등임
-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문화, 교육, 보건, 의료 등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공급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문제는 공공섹터의 서비스가 수요자의 서비스 질적수준 향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Cold service)임
-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경제는 성장하지만 신규고용이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고용감소의 문제는 취약계층에게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등장
 -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정부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확대책으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자본력이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 기업이 초기 투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200억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는가 하면,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판로지원, 정부입찰 문호개방 등의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 신경제체제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무한경쟁을 기초로 하는 신경제의 기초로 발생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와 사회적 통합성의 약화 문제는 이러한 무한경쟁이 연속되는 경제체제 속에서는 점점더 심해질 수 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위해 사회적 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즉, 한계집단의 노동력 통합을 통한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음. 특히, 장기실업자, 장애인, 소수자와 같은 한계집단에 대한 직업훈련, 기술교육을 통해 임시 혹은 정규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함.
- 결국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은 건전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안정적 정착 뿐만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복지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그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가고 있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실패와 공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실패라는 양면적 실패에 대한 대안이라는 의미가 있음.
-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급증한 실업극복의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사회적기업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2007.7.1.) 제정에 따라 제도화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련 육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최근 정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2011.6.9)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도개선책을 제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확산을 정책기조로 하고,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경로 확충, 공공시장 진출 확대, 경영·창업 지원 강화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대, 미소금융을 통한 용자규모의 확대, 특별 보증한도의 책정, 모태펀드 조성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투자재원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을 포함시킴으로서 비영리형 사회적기업들도 자금조달 등에 있어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위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 추천제를 도입하고, 정부 부처 내 산재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분야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우리 대전에서도 2009년 10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2년 7월 대전사회적기업지원전담조직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설치되는 등 지원사업이 본격화 하고 있음
- 2011년 2월 시청 로비에 입점한 건강카페는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 는 모토로 주목을 받고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대전시는 향후 2014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개, 일자리 창출 2,000명을 목표로 사회적 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진행 중에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2012년 수립예정인 대전사회적기업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에 앞서 대전시 사회적 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임.
-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외의 타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전시 사회적기업육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둘째, 대전시 및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지역내 유관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방향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함
- 셋째, 대전시 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 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인증시의 애로사항, 사업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내용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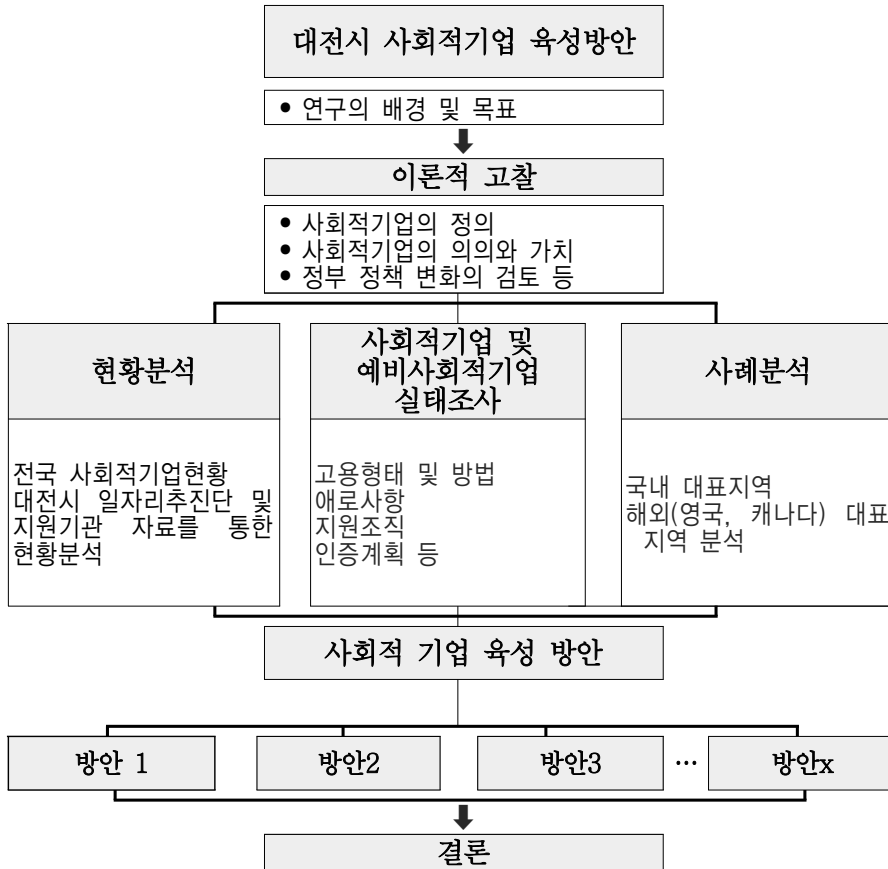
1. 연구내용 및 추진 방법

- 국내 사회적기업 관련 현황 분석
 - 문헌분석, 기존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간접 분석 실시
- 대전시 사회적 기업 현황 분석
 - 대전광역시 일자리추진단 발표자료 및 인터뷰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지원사업, 육성계획 등 현황 분석
- 국내외 사례 분석
 - 기존연구 및 온라인 자료 취합을 통해 사회적기업육성의 국내외 대표 지역 사례를 분석
- 대전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실태조사
 - 대전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대상 전수조사 실시
 - 사회적 기업 대표자 간담회 및 지원기관 간담회 실시
- 대전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의 도출,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의 도출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

2. 연구의 구성 및 추진체계

- 본 연구는 연구내용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5개의 장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1-1〉 본 연구의 추진체계



제2장 이론적 고찰

1. 사회적기업의 개념
2. 사회적기업의 가치
3. 사회적기업의 유형 및 조직
4.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5.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변화

제2장 이론적 고찰

1. 사회적기업의 개념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형태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 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 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즉, 사회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지닌 제3의 경제주체임¹⁾

<그림 2-1> 사회적기업의 개념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



자료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go.kr>)

<표 2-1> 사회적기업과 비영리기관, 영리기업의 비교

구분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영리기업
동기	이타성	양자가 혼합된 동기	이윤추구
핵심가치	사회적 사명	공익성과 시장성의 균형	수익성 + 효율성
목표	사회적 가치추구	사회적가치 + 재무적 가치	경제적 가치추구
자원조달	자선적 자본 정보보조금	다양한 자원조달 혼합	투자적 자본
수익용도	비영리목적사업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이윤 재투자	투자자 배당 및 재투자
리스크수준	낮은 리스크	비교적 높은 리스크	리스크 감수를 장려

자료 : 신용성, 관광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1) 조영복·류정란, 부산지역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9, p.235.

-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상업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독립된 조직을 말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표 2-2> 사회적기업의 개념 비교

구분		내용
EMES (2001)	경제적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재화/서비스를 생산 판매 - 정부나 기업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일정수준의 자율성 유지 -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 수행 - 최소한의 유급노동자를 고용
	사회적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 - 자본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 고객 등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참여 - 이윤배분을 제한적으로 하는 조직 - 지역사회에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
영국DTI(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주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표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주로 기업자체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
OECD(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정신의 조직 - 재화와 용역제공에 직접적 참여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참여적 의사결정 - 본질적 참여정신 - 혜택을 주고 하는 집단의 구체화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 상당한 경제적 위험 감수 - 최소한의 유급근로자 고용 - 이윤극대화 회피와 이윤제한 분배
한국(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OECD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통해 일정수준의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고 주주들을 위한 이익창출이 아니라 사회적 소외의 희생자를 돕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삼으며 창출된 이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재투

자하는 기업임. 즉,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중간으로서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서비스 증가라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제3의 방법임

- 영국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소유주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해 주로 기업자체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정의
- 유럽의 리서치 네트워크인 EMES(2001)는 경제적 기준 네 가지와 사회적 기준 다섯 가지에 기초하여 사회적기업을 정의
 - 경제적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은 (1)지속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을 하여야 하며 (2)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있고 (3)상당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을 하며 (4)최소한의 유급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사회적 차원에서는 (1)지역사회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고 (2)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형성되며 (3)의사결정권이 자본소유에 기반 하지 않고 (4)의사결정에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의해 영향 받은 사람들도 참여하며 (5)이윤배분은 제한적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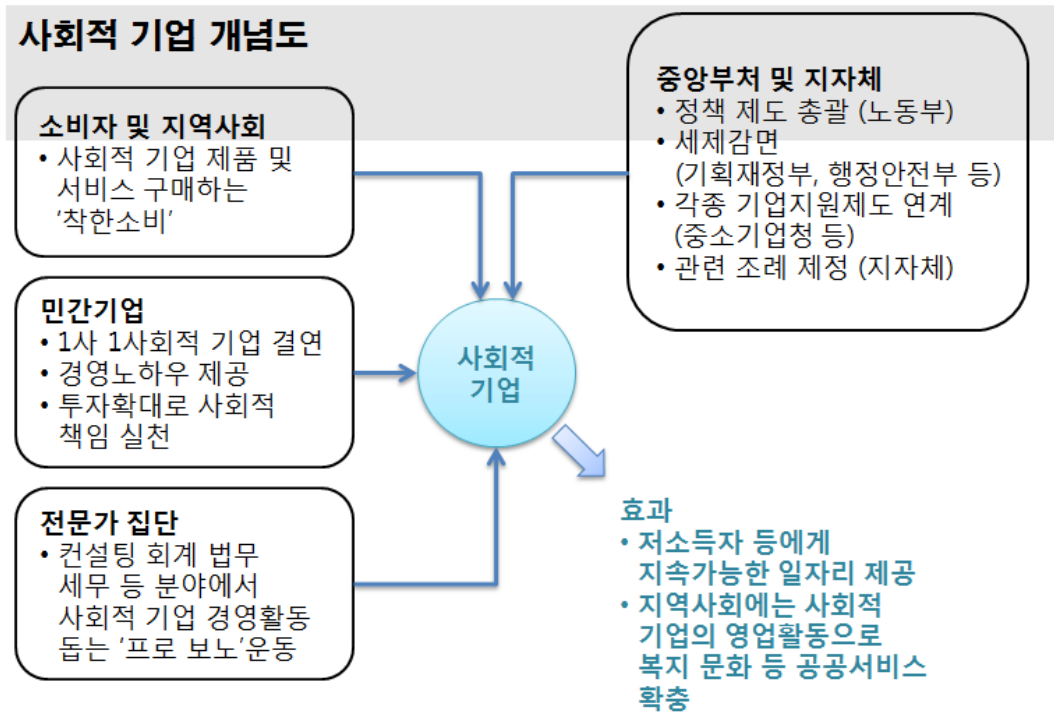
〈표 2-3〉 미국, 유럽, 한국의 사회적기업 비교

구분	미국	유럽	한국
강조점(중점목표)	수익창출	사회적 수혜	사회적 수혜→수익창출 강조
일반적 조직형태	비영리조직	협동회사/협회/회사	비영리조직과 상법상 회사포괄
활동의 초점	모든 비영리활동	대인서비스	대인서비스→다양한 분야로 확대
사회적기업유형	다수	제한적	제한적
이해관계자참여	제한적	일반적	일반적
전략적유성(개발)주도	민간재단	정부/EU	정부
법적프레임워크	부족	개발(또는 개발 중)	개발
이윤분배	원천배제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자료 :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은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며, 지역사회 재건 및 윤리적 시장을 권장하는 등 지역발전과 혁신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사회통합에도 기여함²⁾.

<그림 2-2> 사회적 기업의 관련 주체



출처 : <http://news.donga.com/3//20090302/8702457/1>

2) 조영복(2010.4).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경제 통권61호

2. 사회적기업의 가치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회적경제 조직의 확대는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증가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고용창출 잠재력이 매우 높음.
 - 사회적경제 조직은 고용유발계수가 높다는 점에서 투입비용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큼. 2003년 기준 한국은행 I/O테이블에 따르면 제3섹터 고용유발계수 26.6명, 정부부문 20.1명, 민간비영리부문 17.7명
- 특히 일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참여토록 함. 사회서비스 분야는 여성·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가능
 -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실업자 및 빈곤층 여성가장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해 왔음.
- 사회적경제 조직은 발생한 수익 중 더 많은 몫을 고용주나 투자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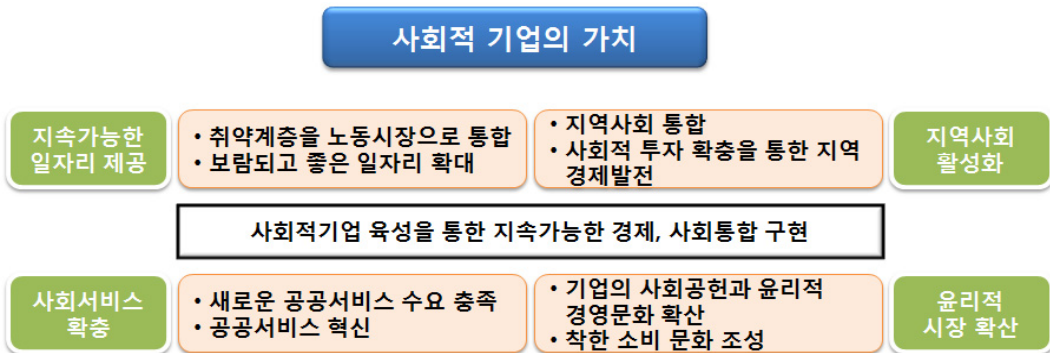
□ 사회적 필요 충족 및 사회서비스 확충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므로 국가가 인식하지 못하는 신규 서비스 수요 발굴
- 기부·후원·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을 결합하여 적절한 비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비 공간의 확대는 소통공간을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회서비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
-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생산과 유통, 판매과정에서 기존 자영업자와 실업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

□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경제조직은 대부분 지역에 뿌리를 내린 조직으로 이들이 공급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및 지역사회 보호서비스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노동수요를 위한 원천을 안정화시키는 일에 도움이 됨.
-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지역사회자본 개발,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대안적 생산과 대안적 소비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유기농산물 판매 생협은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 새로운 소비문화 진작.
 - 자활공동체나 사회적기업은 지불능력이 없어 소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무상 또는 염가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그림 2-3> 사회적 기업의 가치



자료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go.kr>)

□ 윤리적 시장 확산

-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유는 우애의 원칙에 기초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의 투명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증가로 윤리 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
 - 사회적기업의 재화·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착한소비라는 새로운 문화조성
- 사회적경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해서 서비스제공과 옹호기능을 유기적으로 제공하는 시민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마련.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Bolzaga and Torita(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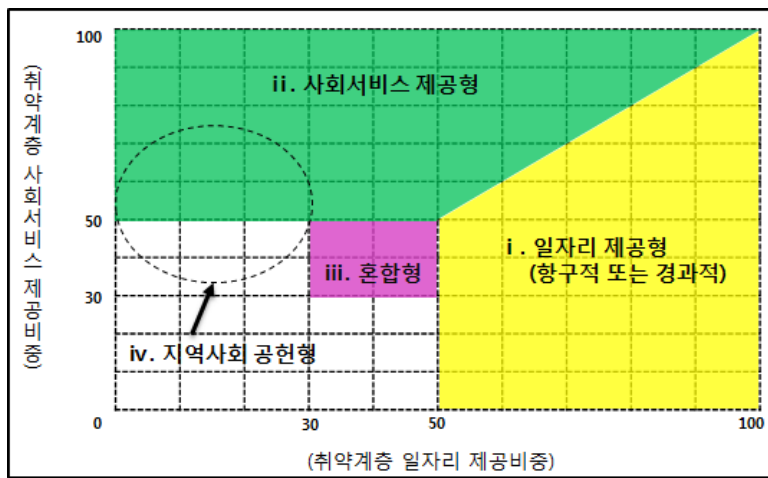
- 기존의 기업가 역할과는 구분되는 사회적기업가의 새로운 기업가정신이 지역발전의 질에 영향을 미침
 -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준공공재의 생산을 늘림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개선
-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고용의 내용은 일반 기업의 고용창출과는 다른 새로운 고용을 창출
 -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여성, 노년층과 같은 개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고용임
- 지역사회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줌
-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은 외생적 요인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때 지역사회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가치를 찾고 실현케 함
 - 이동하기 쉽지 않은 자원(환경유산, 자원노동(voluntary labor) 등 인적자본)의 가치를 찾고, 역사·문화유산 등 지역자산을 활용
- 증진된 사회적 신뢰관계로 나타나는 긍정적 외부성이 지역수준의 사회적 자본축적을 유지케 함

3. 사회적기업의 유형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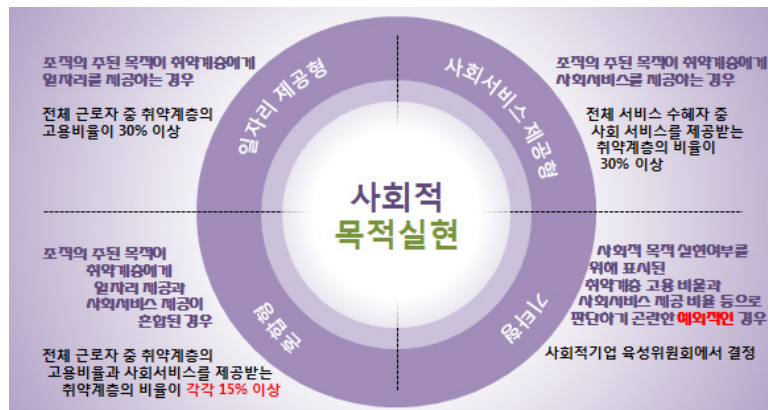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의 유형

-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법적으로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등 네 가지 분류로 구분됨³⁾

<그림 2-4>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상의 사회적기업유형



<그림 2-5> 사회적기업유형별 사회적목적



자료 : 노동부(2008.11).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

3) 채종현, 이종한(2009.1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대표적 사회적 기업 조직

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 법적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2007년 1월 3일 제정)

■ 사회적기업의 정의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

- 법적근거, 인증요건, 지원 등의 측면에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표 2-4>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및 규칙
인증요건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할 것 ③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이상) ⑥정관 및 규약을 갖출 것 (상법상회사의 경우)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매출규모 무관) ③사회적목적실현(취약계층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상법상회사의 경우)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지원	①경영컨설팅 ②공공기관우선구매 ③시설비 등 지원 ④세제지원 ⑤사회보험료 지원 ⑥전문인력 채용지원 ⑦인건비 지원 ⑧사업개발비 지원 ⑨모태펀드	①경영컨설팅 ②공공기관 우선구매 (기관별 차이 있음) ③인건비 지원 ④사업개발비 지원 ⑤모태펀드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③ 마을기업

■ 추진경과

- 희망근로사업 35만 명(2009.6-2010.6)
- 지역공동체일자리 10만 명(2010.7-2011.12)
- 마을기업 550개 육성, 안정적 일자리 3,145개 창출(2011)

■ 마을기업 개념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

④ 농어촌공동체회사(농식품형예비사회적기업)

■ 법적 근거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2011년 12월)

■ 농식품형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자.

〈표 2-5〉 (지역형)사회적기업과 농식품형예비사회적기업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기관	고용노동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물식품부
①조직형태	민법상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4대보험(건강, 연금, 산재, 고용보험) 가입필수 ※건강보험가입필수		
③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 수혜자 30%이상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 30%이상 ※5인이상 고용필수		좌동, 농어촌지역의 취약계층을 수혜자로 하거나 고용
	지역사회공헌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수혜자 비율 이 20%이상 ※지역사회공헌증명필요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수혜자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형 : 육성위원회심의	기타형 : 지자체위원회 회의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위원회, 이사회 등에 수혜자, 근로자 참여 ※정관, 회의록 기재 및 공증	- 해당 없음 -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수입이 노무비의 30%이상 ※세무/회계기관 확인	- 해당 없음 -	
⑥정관규약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법정사항의 조건구비 : 목적, 사업내용, 명칭등	- 해당 없음 -	
⑦사회적 목적 재투자 ※지역 조건	배분 가능한 이윤과 청산재산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 해당 없음 -	농어촌지역 대상	
※증명서류의 조건	신청일 직전 6개월	신청일 직전 3개월	

⑤ 자활기업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 자활기업의 개념

-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의미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공동체로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음.

〈표 2-6〉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의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비고
정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	자활기업은 조합을 구성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할 때 그 주체가 수급자 및 피상위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사회적 기업에서는 그러한 규정이없고 기업의 사회적 목적성을 규정하고 있음
기타인정 또는 인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형태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상법상 회사 등 영업조직 형태를 갖는 사회적 기업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투자,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타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등의 요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자활근로 임금이상 수의 금액 배분 가능 - 자활근로 사업단의 자활공동체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에 비해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은 사회적 목적과 이윤의 사회적 투자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구성원 기준은 자활기업이 더 엄격하나 사회적 목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더 적합함.
기업활동 목적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자들의 자활	대상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일정부분이 동일
이윤 배분의 제한	있음	없음	
비영리성	강함	약함	
조직형태	법인(영리, 비영리), 비영리단체	조합, 공동사업자	
의사결정방식	이해당사자 참여	규정 없음	

⑥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2011년 12월)
- 각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공동체회사
- 환경부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 문화재청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14개소)
- 산림청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형 예비사회적기업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형 예비사회적기업
- 여성가족부 : 여성형 예비사회적기업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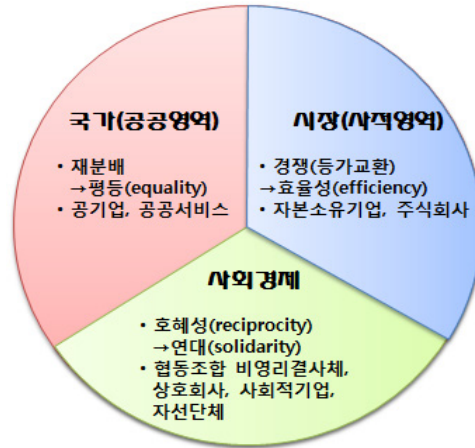
〈표 2-7〉 한국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구분	관계부처 (추진연도)	개념	주요 정책추진내용	목적	근거법
자활 공동체	보건 복지부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 조직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 설립 및 운영지원 · 창업 후 최대 1년간 수급자에 한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임금 지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사회적기업	고용 노동부 (2007)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인증제도 도입 · 경영·재정·홍보사업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법
마을기업	행정 안정부 (2010)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조치 사업인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마을기업으로 변경 · 사업비 지원, 금융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	-
커뮤니티비 즈니스	지식 경제부 (2010)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잠재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하는 것	· 2010년 6개 중간지원조직과 MOU 체결 및 10개 시범사업 추진 · 8개월간 사업경비 지원	지역 활성화	-
농어촌공동 체회사	농식품부 (2011)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조직	· 농촌 자립기반 구축에 초점으 fens 지역 공동체 조직 지원 · 마케팅, 기술개바르 홍보 등을 위한 활동비 지원(최대2년)	지역 활성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4.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 사적경제와는 다른 지향을 가진 경제임.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를 가진 경제가 시장경제인데 반해, 사회적경제는 비이윤추구 동기를 가진 경제이며 공익을 추구하는 경제임.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사회적배제자 및 시장퇴출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이타주의적 효용을 추구하는 경제임.

<그림 2-6> 국가, 시장 및 사회적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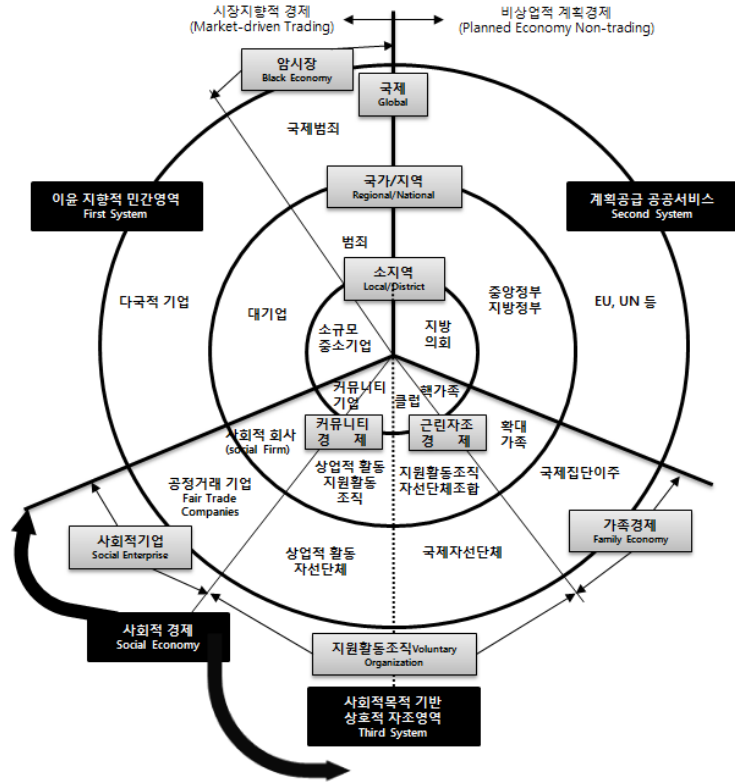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의 구현 구조는 사회적조직이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적목적을 구현하는 형태임

<그림 2-7> 사회적경제의 구현구조



- 사회적경제는 제1체제 이윤 지향적 민간상업시장 영역, 제2체제 계획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비상업적 계획경제 영역, 제3체제 호혜와 자조의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영역 중 사회적기업과 시장 지향적 상업적 활동 영역에 해당(Pearce(2003), Brady(2003))

<그림 2-8> 사회경제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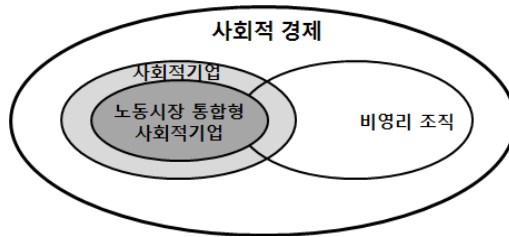
자료 : Pearce(2003), Brady(2003)의 책, 장원봉(2006; 38) 재인용

-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협동조합(Cooperatives), 상호공제조합(Mutual benefit societies), 비영리 및 지역사회조직(Associations and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 재단(Foundations) 등을 포함.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공동체, 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농협5),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공제조합, 지역화폐(통화), 서민금융(마이크로크래딧), 공정무역, 로컬푸드운동조직, 아나바다운동단체 등이 포함됨.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구분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위의 차이가 가장 크며, 목표 및 재원 운영방식, 이윤 등에 있어서는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표 2-8〉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비영리조직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비영리조직
목표	민간기업과 같이 영리추구	수익성 배제	수익성 추구가능
재원	정부보조금, 개인과 기업의 기부를 모두 수용	개인의 출자로 운영, 경우에 따라 정부보조금 수용	개인과 기업의 기부를 모두 수용, 경우에 따라 정부의 지원수용
운영방식	기업식 운영가능 영리적 사업기술 활용	구성원의 민주적 통제	기업식 운영가능, 전문가에 의한 소수 통제
시장경제	시장경쟁에서 상당한 위험감수	시장경쟁에서 상당한 위험감수	시장외부 공익활동
고용	유급노동자 채용	유급노동자 채용	자원봉사자위주, 경우 따라 유급 노동채용
이윤	공익적 목적사용, 또는 구성원에게 이윤배분	공익적 목적사용 또는 구성원에게 이윤배분	공익적 목적 사용

〈그림 2-9〉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비영리조직의 범위



5.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변화

□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 정부주도 협동조합과 빈민운동으로 명맥을 유지하다 정부재정지원 등 정부육성단계를 거쳐 민간의 자생적 육성단계로 전환되어 발전해옴
 - 2000년대 이전 : 사회적경제의 잠복기 내지 받아기로 일자리 중심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도입기
 - 2005년 이전 : 정부의 재정지원 등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기로 결사체중심의 사회적 경제 형성기
 - 2006년 이후 :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민간육성 중심으로 전환을 시도

<표 2-9> 한국 사회적경제 역사

시기	주요내용
잠복기(1997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빈민운동 등 명맥유지 · 1990년 사회적경제 본격화 시작 · 20개 자활지원센터 실직자 생산 공동체 설립
발아기(1997년~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재정지원으로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 시작 - 사회적일자리 초보적 형태 확보 · 제3섹터에 대한 본격적 논의 시작
양적팽창기(2001~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자활사업 전국화 →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등장 - 242개 자활지원센터 설립 - 1,000여개 자활근로 사업단 - 300여개의 자활공동체 설립
전환모색기(2003~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일자리 사업 도입 - 사회적 경제를 위한 제반법규 정비 촉진
질적 전환기(2006~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사회적 기업화(사회적 기업육성법제정) - 영국식 사회적기업법률 벤치마킹 - 사회적기업 656개 인증, 향후 1,000여개로 육성 ·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2011)

자료 : 노대명,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제2권 제5호, 2007, p.67.

□ 사회적경제 관련법률 및 조례

○ 사회적기업육성지원법 외 11개 법률 제정운동

〈표 2-10〉 사회적경제관련법률/조례

구분	사업명	법률/조례명	비고
법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지원법(2007.7.1.)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2011)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1967.2.4.)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12.27.)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1962.1.2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1963.5.29.)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1972.8.17.)	
	산림조합	산림조합법(1980.1.4.)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1999.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2.5.)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례	사회적경제	충남 사회적경제육성조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	11개 시군
	자활기금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6개 시군

- 사회적경제관련 법률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개별협동조합법(8개), 자활공동체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대표적임.
- 한편,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주요 내용 또한 대동소이함.
 -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경영지원, 시설비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홍보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관련계획

- 중앙정부 및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획 수립
 -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2011-2015년)”, 충남도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2012)” 등 사회적경제라는 명칭으로 계획 수립
- 계획의 비전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혁신”, “사회통합”, “사회적기업활성화”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목적 달성과 관련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충남은 “순환과 공생의 건강한 지역사회” 등을 강조하고 있어, 보다 거시적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계획의 목표는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가 혼재되어 사회적기업 몇 개를 육성하고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화된 목표를 제시
 - 서울시는 GRDP 대비 사회적경제 및 고용 비중, 충남도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제시
- 계획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 친화적 문화 및 환경조성, 사회적기업 가육성, 사회적기업 발굴/신규설립,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중간지원시스템 구축, 사회적기업지원, 협력적 생태계 조성 등임
 - 대부분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서울시는 협동조합 설립지원을 제안하고 있어 사회적경제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

□ 향후의 변화 전망

- 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기조 변화
 - 정부의 직접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정부재정 의존을 높이고 자립역량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방식을 확대하는 것보다 일반 영리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와 차별 없이 다양한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여 자립적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방향 전환

-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지원법 등 각종 관련법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공공조달과 금융지원 체계를 재정비하여 시장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유사사업 통합지원체계 및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되었던 지원 사업(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큰 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통합하고 각 사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정부지원의 중간지원체계(권역별 지원기관)를 통합 운영
-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확대(지역사회 기여형 신설)하고, 부처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정부 부처 간 유사사업의 통합연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안정적 법인격 보장예상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이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선택 가능한 법인격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 이로 인해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협동조합 간 연합이 법적으로 가능해져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들이 사업연합을 통해 자립역량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시민사회단체의 주도하에 추진 중임
- 정부, 종교계, NGO, 봉사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국 네트워크와 광역시도별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네트워크 및 10여개 광역시도 네트워크가 출범하여 사회적기업 생태계조

성을 위해 활동 중임

○ 협동조합법 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성장가능성 제고

-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고 5년이 지나면서 정부와 민간 모두가 다양한 시행착오 및 연구 사업을 통해 구체적 해결과제를 도출
- 2011년 정부정책의 전반적인 변화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되었음.
-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및 그로 인한 성장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사회적경제 전망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기업에 안정적인 법인격을 제공하여 대외적 신뢰도를 높여내는 효과가 발생하여 사회적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됨
- 국제연합(UN)의 자료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생산하고 있고,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속해 있는 섹터 자체가 복지계층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은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을 가져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기존의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등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즉,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밀착한 경제공동체에 대한 시민사회와 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협동경제를 담아낼 수 있는 조직형태로서 협동조합은 현실성 있는 선택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제3장 사회적 기업 현황

1. 전국 사회적 기업 현황
2. 대전시 사회적기업 현황
3. 대전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제3장 사회적 기업 현황

1. 전국 사회적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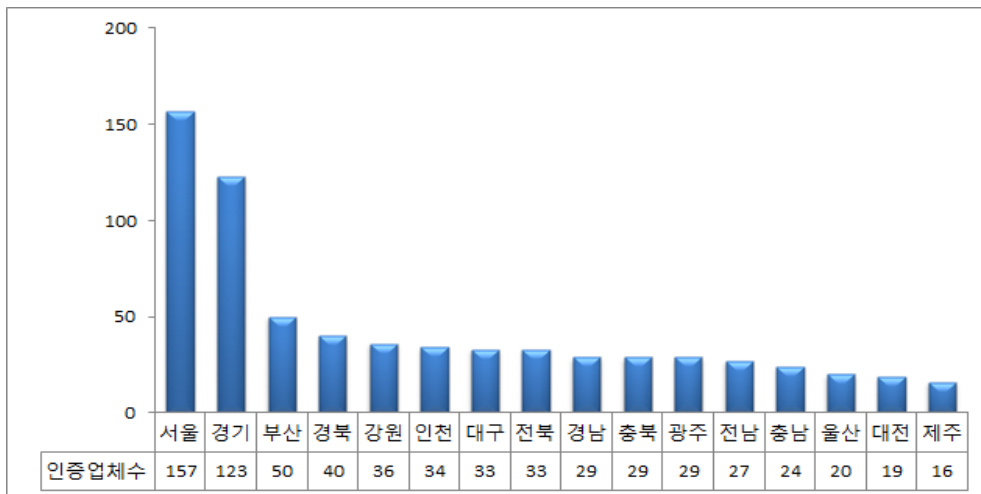
○ 지역별 분포 현황

- 2012년 9월 기준 지역별 사회적 기업의 누적 인증 업체 수는 서울 157개소, 경기 123개소, 부산 50개소, 경북 40개소, 인천 34개소, 대구 33개소, 대전 19개소 등 총 699개소임

○ 정부는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 육성, 5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하였음(2007.1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시)

- 2012년 하반기 2단계 사회적기업 5개년계획수립을 통한 정책방향 재설정

<그림 3-1> 지역별 사회적기업 현황



- 권역별 누적 업체 수 비중은 수도권이 46.2%, 동남권 13.2%, 호남권 12.4%, 대경권 10.4%, 충청권 7.1%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비중의 추세 변화는 일정한 패턴 보다는 불규칙적 변화를 보이며 지역 내 총 생산, 인구 수 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사회적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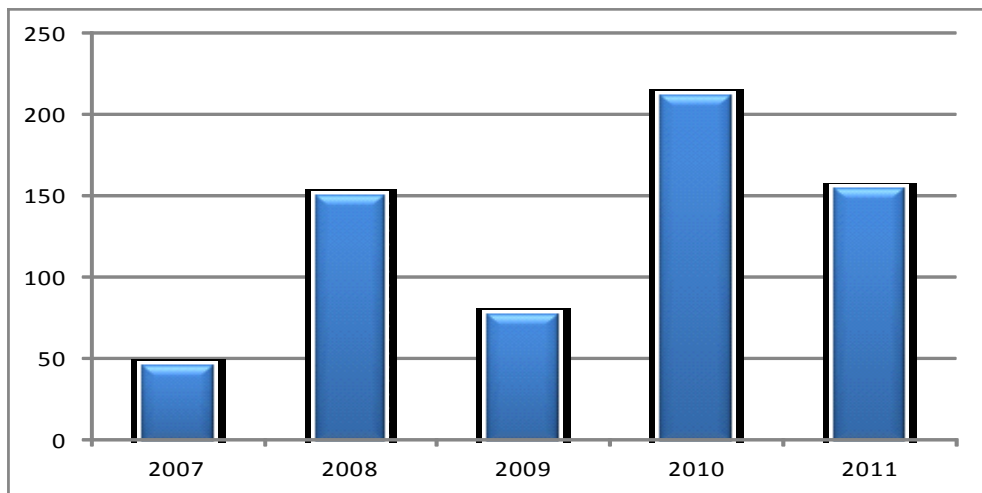
업진흥원, 『2010 성과분석』)

- 광역시 누적 비중은 서울 23%, 부산 6%, 인천 5%, 대구 5%, 광주 4%, 울산3%, 대전 3%로 대전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

○ 사회적기업 성장 추이

- 전국 사회적 기업 인증업체 수는 2007년 45개소에서 2011년 154개소로 3배 이상 증가
- 연도별 인증업체 수를 살펴보면 2007년 45개소, 2008년 150개소, 2009년 77개소, 2010년 211개소, 2011년 154개소로 불규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 2011년 말 현재 누적 업체 수는 637개소

<그림 3-2> 연도별 인증 업체 수



- 『2010 성과분석(38p)』에 따르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⁴⁾ 육성 정책 시행 이후 2011년 까지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업체

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조직)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고용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돕는 사업이다.

수는 수도권지역(21개소)을 제외하고는 강원지역 3개소, 전남지역 1개소에 불과함. 이는 아직 뚜렷한 정책의 효과가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표 3-1〉 지역별·연도별 인증 현황(2012. 6. 25 현재)

(단위 : 개소, %)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서울	11	24%	28	19%	20	26%	45	21%	44	29%	148	23%
인천	3	7%	8	5%	6	8%	16	8%	1	1%	34	5%
대전	2	4%	5	3%	2	3%	2	1%	7	5%	18	3%
대구	1	2%	4	3%	3	4%	15	7%	7	5%	30	5%
광주	1	2%	8	5%	2	3%	5	2%	11	7%	27	4%
울산	0	0%	6	4%	1	1%	9	4%	4	3%	20	3%
부산	2	4%	7	5%	5	6%	10	5%	13	8%	37	6%
경기	10	22%	20	13%	15	19%	37	18%	30	19%	112	18%
강원	6	13%	13	9%	1	1%	13	6%	2	1%	35	5%
충남	0	0%	3	2%	2	3%	11	5%	3	2%	19	3%
충북	3	7%	11	7%	1	1%	9	4%	2	1%	26	4%
전남	1	2%	10	7%	5	6%	7	3%	3	2%	26	4%
전북	3	7%	9	6%	3	4%	9	4%	6	4%	30	5%
경남	1	2%	6	4%	5	6%	8	4%	7	5%	27	4%
경북	1	2%	5	3%	5	6%	12	6%	13	8%	36	6%
제주	0	0%	7	5%	1	1%	3	1%	1	1%	12	2%
합계	45		150		77		211		154		637	

자료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리스트』, 2012. 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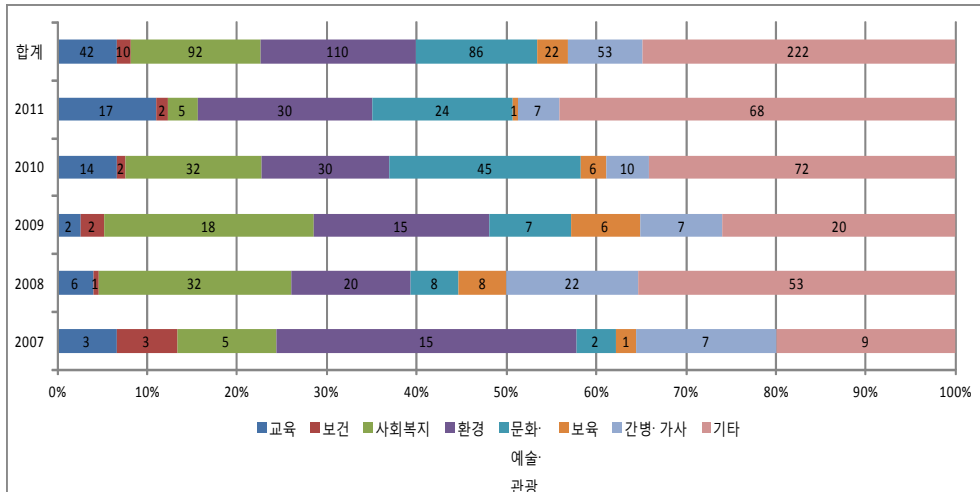
○ 업종별 변화 추이

- 연도별 신설 인증업체 업종은 2012년 기준 기타 업종이 240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환경업(117개), 문화·예술·관광업(95개), 사회복지업(94개), 간병·가사업(57개), 교육업(43개), 보육업(22개), 보건업(12개)순으로 나타남. 산림보전·관리업의 경우 인증업체가 없음.

- 2007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환경업. 그러나 이후 부터 인증률이 급감하여 2011년 전체 기업 중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업의 경우에는 2007년 11%에서 2008년부터 2009년 까지는 상승하여 20%이상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부터 감소하여 2011년에는 3%에 그침
- 기타 업종의 경우 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 인증 기업 중 44%의 비중(누적 35%)을 차지
- 교육의 경우 2009년까지 인증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부터 상승하여 전체 누적 비중에서 초기의 비중인 7%를 유지
- 보건업의 경우 2007년 7%에서 2%(누적)로 비율이 감소
- 문화·예술·관광업은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말 누적 비중에서 14%를 차지
- 간병·가사업은 계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대전지역의 경우 교육업 1개소, 보건업 1개소, 사회복지 4개소, 간병·가사업 1개소, 기타 7개소가 인증.

[그림 3-3] 업종별 비중

(단위 : 개소)



<표 3-2> 업종별 인증업체 수

(단위 : 개소)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관광	보육	산림보전·관리	간병·가사	기타
2007	3	3	5	15	2	1	0	7	9
2008	6	1	32	20	8	8	0	22	53
2009	2	2	18	15	7	6	0	7	20
2010	14	2	32	30	45	6	0	10	72
2011	17	2	5	30	24	1	0	7	68
계	43	12	94	117	95	22	0	57	240

자료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리스트』, 2012. 6. 25.

2. 대전시 사회적기업 현황

□ 사회적기업 지원 경과

○ 2009년

- 10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010년

- 11월 시설비용차보전(하나은행, 신용보증재단)
- 4월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 1월 육성위원회 등 실무추진단 구성

○ 2011년

- 11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
- 11월 변호사 등 52명 전문가 재능나눔 POOL 구성
- 6월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지정 운영
- 4월 대전시 실·국별 사회적기업 발굴 대회 ⇒ 31개소
- 2월 시청 로비에 건강카페 입점개소

○ 2012년

- [진행중] 2012~2017년 대전사회적기업 육성 중장기 전략수립
- [예정] 1사 1사회적기업 후건기관 새출발
- [예정] 2012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박람회
- 7월 대전사회적기업지원전담조직 구성(대전경제통상진흥원)
- 2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협의체구성

○ 2014년 까지 대전시의 육성 목표

- [예비]사회적기업 100개 육성
- 일자리 창출 2,000명

<표 3-3> 대전시 육성목표(1)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00	38	17	15	15	15
사회적기업	37	12	7	6	6	6
예비사회적기업	63	26	10	9	9	9
일자리수(명)	2,000	760	340	300	300	300

<표 3-4> 대전시 육성목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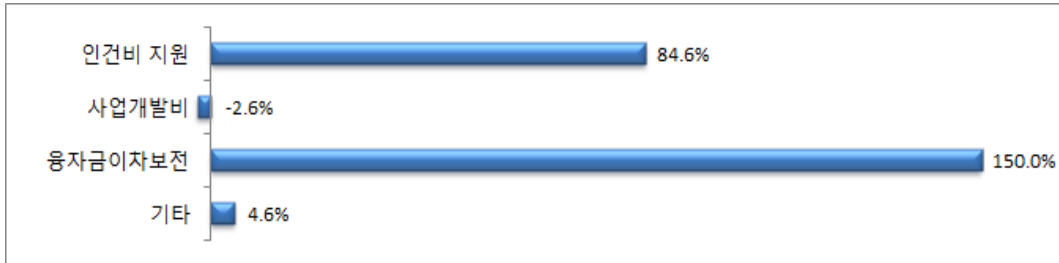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사회적기업	19	11('07년~' 10년)	7	1
대전형예비	70	15	24	31

□ 지원 현황

<표 3-5>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현황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인건비 지원	2,83	2,081	702	4,384	3,318	1,066
사업개발비	1,851	1,481	370	3,417	2,734	683
사업개발비	750	600	150	730	584	146
융자금이자보전	32		32	80		80
기타	150		150	157		157

<그림 3-4> 사업별 증감비율



<표 3-6> 재정지원 실적현황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금액	업체수	인원(명)	금액	업체수	인원(명)
인건비 지원	1인당 980천원	32	232	1인당 1,000천원	46	271
사업개발비	677백만원	34	-	380백만원	27	-
융자금이차보전	575만원	6	-	1,068만원	8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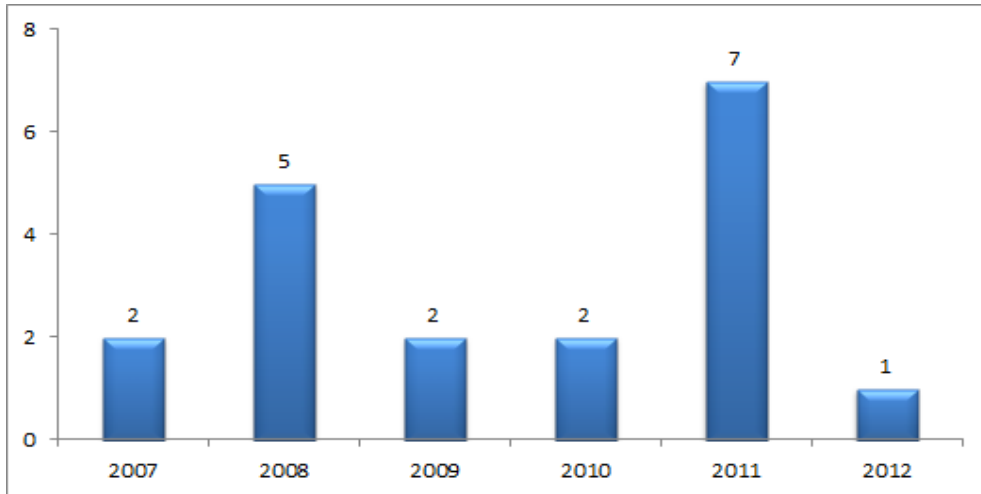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기준
 - 2010년 932천원, 2011년 980천원, 2012년 1,000천원
- 사업개발비 업체당 지원한도(1년 기준)
 - 사회적기업 70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30백만원
- 시설비 융자이차보전 : 2010년 11월부터 운용
 - 업체당 2억 이내 융자에 대해, 연 4% 이자차액 보전(최고 5년 이내)

<표 3-7> 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계
		일반	대학	부처형	
운영 업체수	19	40	4	2	65

○ 2012년 9월 신규인증업체(공감만세)포함

- 전국(699개) 대비 2.7%

<그림 3-5> 연도별 대전지역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표 3-8>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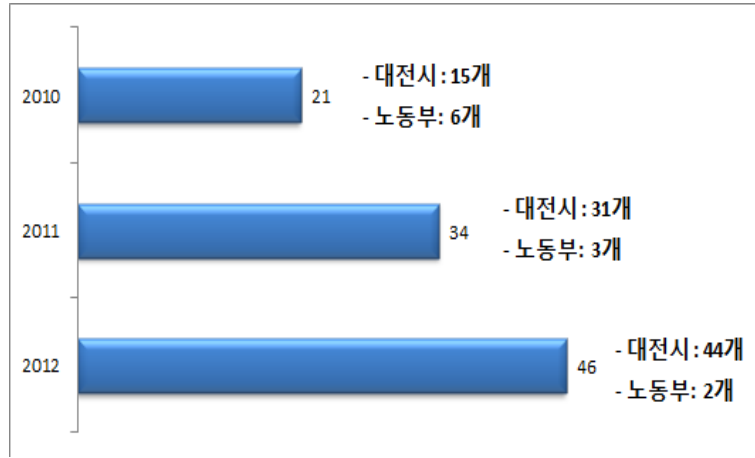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계
		일반	대학	부처형	
운영 업체수	19	40	4	2	65

○ 대학 : 대학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대전시가 발굴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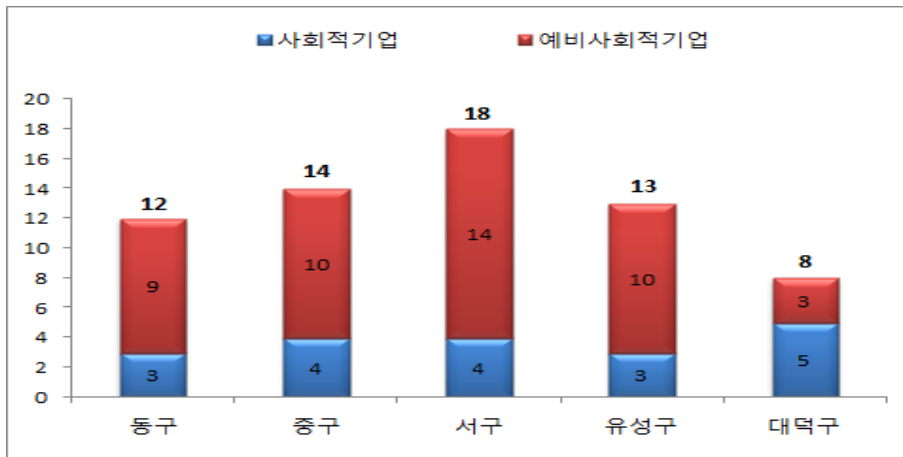
- 한남교육사랑 등 4개 업체 신규 지정(9월 21일)

○ 부처형 : 환경부·문화재형 등 정부부처에서 발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그림 3-6> 대전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그림 3-7> 대전시 구별 사회적·예비사회적 기업 현황



<표 3-9> 대전시 사회적·예비사회적 기업 업종별 비율

구분	전국		대전광역시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사회적기업	예비
교육	43	6.2	2	3.1	1	1
보건	12	1.7	2	3.1	1	1
사회복지	95	13.6	4	6.3	2	2
환경	123	17.6	11	17.2	5	6
문화예술관광	97	13.9	8	12.5	1	8
보육	22	3.1	1	1.6	0	1
산림보전관리	0	0.0	1	1.6	0	1
간병 가사	57	8.2	1	1.6	1	0
기타	250	35.8	34	53.1	8	26
계	699	100.0	64	100.0	19	46

주 : 기타 : 제조기술기반 사업, 대학교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표 3-10> 고용인원 현황

구분	인증(지정)당시		현재(2012년 8월)			취약계층
	전체근로자	취약계층	전체근로자			
			계	인건비지원	자체고용	
계	815	655(80.3%)	886	260	626	630(71.1%)
사회적기업	368	318(86.4)	329	85	244	212(64.4%)
예비사회적	447	337(75.3)	557	175	385	418(75.0%)

- 현재 사회적기업의 전체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인증 당시 보다 22% 감소한 64.4%로,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 지원 종료에 따른 인력감축 결과로 해석됨
- 또 전체 고용인원 886명 중 71%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고용형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일자리 창출에 시사하는 바가 큼.

〈표 3-11〉 취약계층의 유형

구분	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장기실업	기타
명	630	380	127	61	34	28
비율	100.0	60.3	20.2	9.7	5.4	4.4

〈표 3-12〉 목적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사회적기업 18개, 예비 40개)

구분	전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업체수	취약계층고용	업체수	취약계층고용	업체수	취약계층고용
일자리제공형	33	433(68.7%)	9	120(19.0%)	24	313(49.7%)
사회서비스제공형	6	18(2.9%)	1	5(0.8%)	5	13(2.1%)
혼합형	13	161(25.6%)	7	85(13.5%)	6	76(12.1%)
지역사회공헌형	5	16(2.5%)	-	-	5	16(2.5%)
기타형	1	2(0.3%)	1	2(0.3%)	-	-
계	58	630(100.0%)	18	212(33.7%)	40	418(66.3%)

- 일자리제공형은 433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전체 취약계층 고용 비율의 68.75(사회적기업 19%, 예비사회적기업 49.7%)를 차지

3. 대전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실태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설계

- 조사대상은 크게 대전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뉜. 금번조사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한 대표자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종업원 조사와 동시에 추진하였고, 종업원 조사 결과는 타 연구에서 취합 정리하였음.
- 조사대상별 일반현황은 2012년 9월 기준이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등록 기업을 대상⁵⁾으로 하였음.

<표 3-13> 대전시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조사 설계표

구분	내용
조사명	2012 대전시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실태조사
조사대상	대전시 사회적 기업 19개 대전시 예비사회적 기업 45개
유효표본수	사회적 기업 19개 및 예비사회적 기업 45개
조사방법	전수조사: 조사원 방문 설문
조사기준년도	2012.9 현재 기준
조사기간	2012.9.11.~9.21

(2) 조사내용 및 방법

- 본 조사는 대전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의 일반 실태 분석 및 효과적인 지원방안수립 및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방향 도출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었음.
- 조사방법으로는 기존 풀뿌리 지원센터의 현황분석 자료와 충남의 사회적기업 설문조사표를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기타 연구원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연구진과의 설문항목 조정을 거쳐 항목을 설정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풀뿌리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대전광역시 일자리추진단의 사회적기업담당과의 사전 인터뷰 및 설문항목 검토 및 수정과정을 거쳐 확정하였음.
-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예비사회적기업조사는 인증계획부분을 추가하였음. 조사 결과에 대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주관 연구회에서 1차 발표하였고, 사회적기업대표자 및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1차 결과의 오류부분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음

5) 조사 종료후 사회적 기업 및 지원기관 간담회에서 지적된 사회적기업 지정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일부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변경하여 처리되었음

〈표 3-14〉 조사항목 및 내용

대상	영역	세부내용
사회적기업	일반현황	인증시기, 조직형태, 주요상품 및 서비스, 매출액, 고용규모, 설립년도, 사업유형,
	운영현황	설립 목적 고용형태별 현황 및 향후 고용계획, 인력채용 경로 물품 구입 및 판매처 유통 경로 지원기관 및 지원유형
	애로사항 및 정책지원수요	각종 지원에 대한 만족도 인증시의 애로 사항 사회적기업지정의 효과 설립목적 부합 운영상황 및 애로 운영상의 애로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지원수요
예비사회적기업	일반현황	지정시기, 조직형태, 주요상품 및 서비스, 매출액, 고용규모, 설립년도, 사업유형,
	운영현황	설립 목적 고용형태별 현황 및 향후 고용계획, 인력채용 경로 물품 구입 및 판매처 유통 경로 지원기관 및 지원유형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도움 정도
	애로사항 및 정책지원수요	각종 지원에 대한 만족도 인증신청시의 애로 사항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의 효과 설립목적 부합 운영상황 및 애로 운영상의 애로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지원수요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의 지원 수요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계획 전환일정 및 전환 유형, 전환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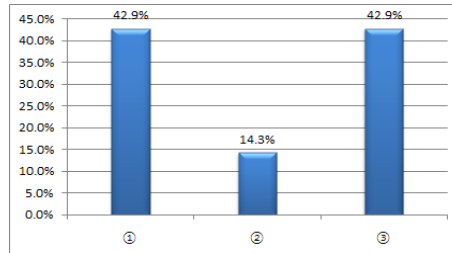
2) 사회적기업 조사결과

(1) 일반현황

- 대전시 사회적기업은 총 19개사로 인증시기는 2009년 이전 6개, 1010년 2개, 2011년 6개사임(5개사는 무응답). 조직형태는 상법상의 회사가 12개사로 63%를 차지하고 사회복지법인이 3개사로 다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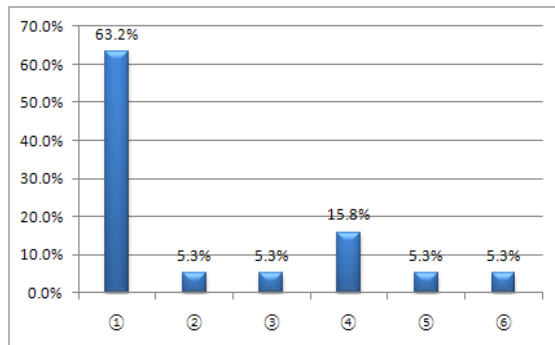
〈표 3-15〉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인증시기

구분	개	%
① 2009년 이전	6	42.9
② 2010년	2	14.3
③ 2011년	6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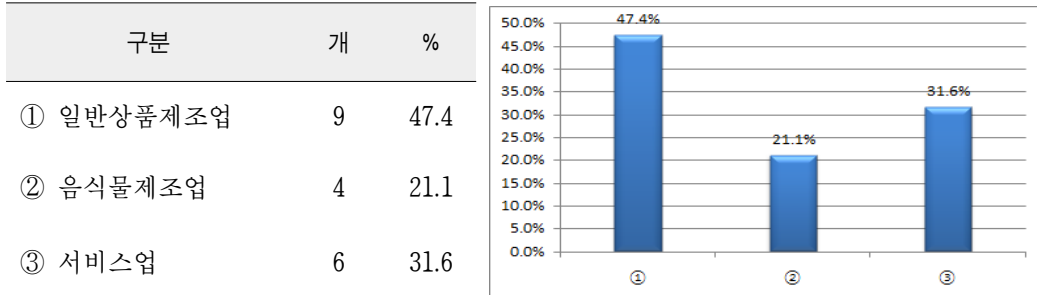
〈표 3-16〉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구분	개	%
① (상법상)회사	12	63.2
② (민법상)법인	1	5.3
③ 비영리민간단체	1	5.3
④ 사회복지법인	3	15.8
⑤ 조합(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1	5.3
⑥ 기타	1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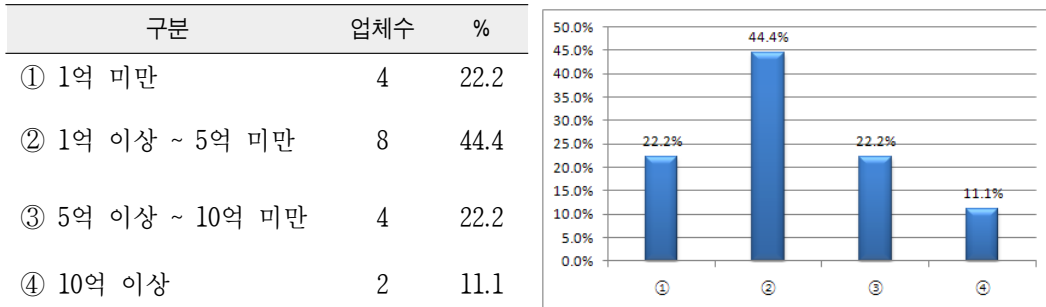


- 주요 상품 및 서비스는 일반제품제조업이 9개사, 서비스업 6개사, 음식물제조업이 4개사임
- 매출액 규모는 1억이상 5억미만이 가장 많고, 종업원규모는 7~13명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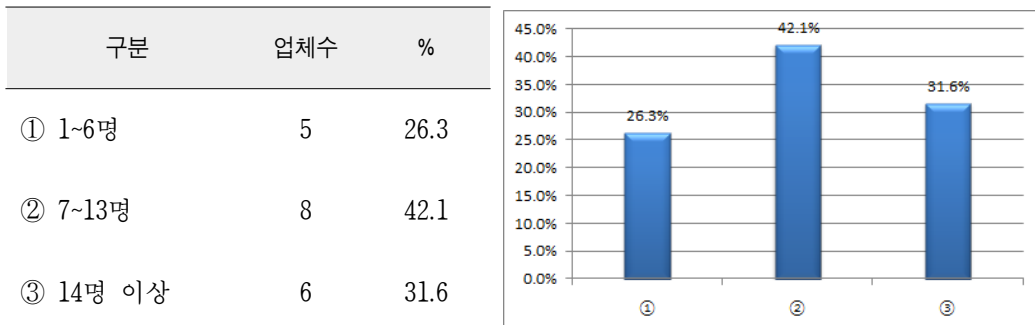
<표 3-17>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주요상품 및 서비스



<표 3-18>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총매출액



<표 3-19>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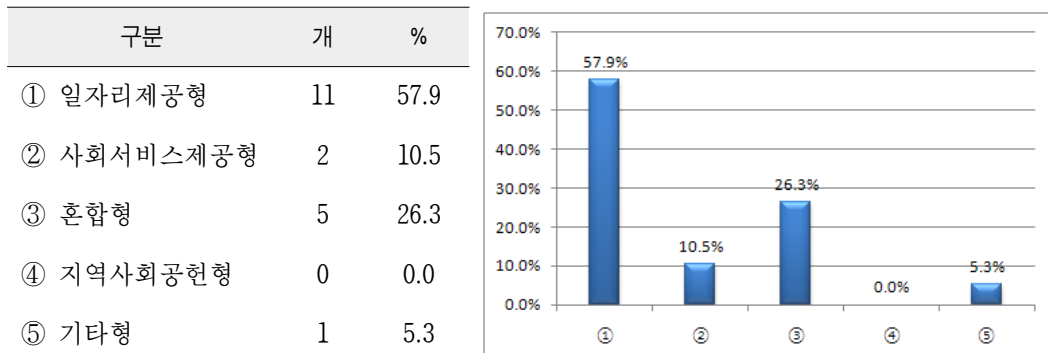
○ 설립년도는 아래 표와 같음⁶⁾. 사업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많은 11개사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증시에 일자리제공형이 기준을 달성하기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6) 은수레자원, (주)그린텍, 공감만세, (주)새빛기업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자문에 따라 조사후 인증기업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표 3-20〉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노동부 인증시기

구분	년도	업체수	비고
노동부 인증시기	2000	1	(주)새빛기업
	2002	1	민들레의료생협
	2006	2	(사) 엠마오 호스피스회, 한울타리
	2008	5	(주) 어울림, (주) 야베스 공동체, (유) 행복한 밥상, 학교방과후전문인력지원사업단, 은수레자원
	2010	5	(주) 하이브, 행복한 일터 사업단, (주) 산바들, (주) 파란세상, (주) 플러스산업
	2011	2	(주) 사회적기업 그린터치, (주) 사람앤기술
	2012	1	(주)그린텍
	결측값	1	성세재활자립원
	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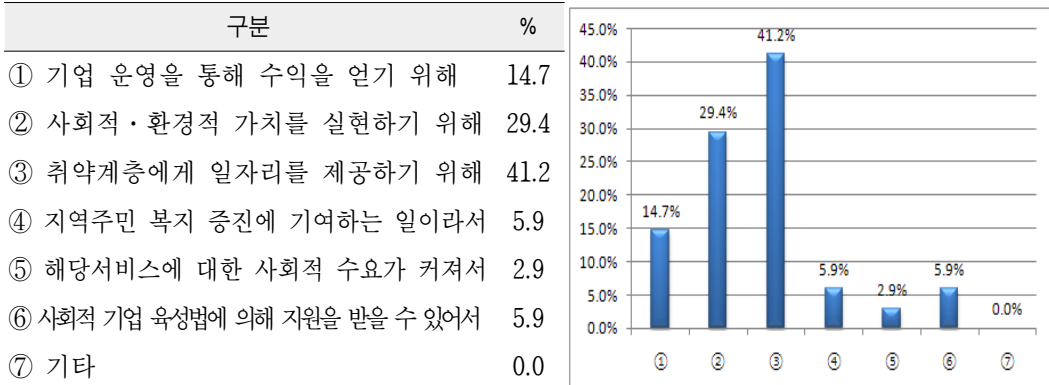
〈표 3-21〉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2) 운영현황

- 사회적기업의 설립목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답변이 4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사회적·환경적 가치실현(29.4%), 기업운동을 통한 수익창출(14.7%)임.

〈표 3-22〉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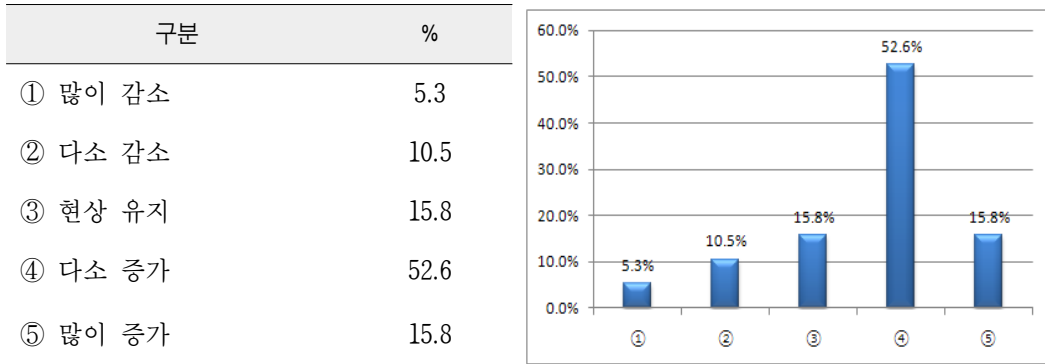


- 고용유형은 총 유급근로자수가 320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유급 근로자 보다는 장애인(78명), 기타취약계층(77명)의 고용비율이 높게 나타남. 전체 유급근로자수와 취약계층(외국인, 장애인, 기타취약계층) 근로자수는 일치하지 않으나, 고용자의 약 반수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추정됨
- 향후 2-3년후의 고용에 대해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3〉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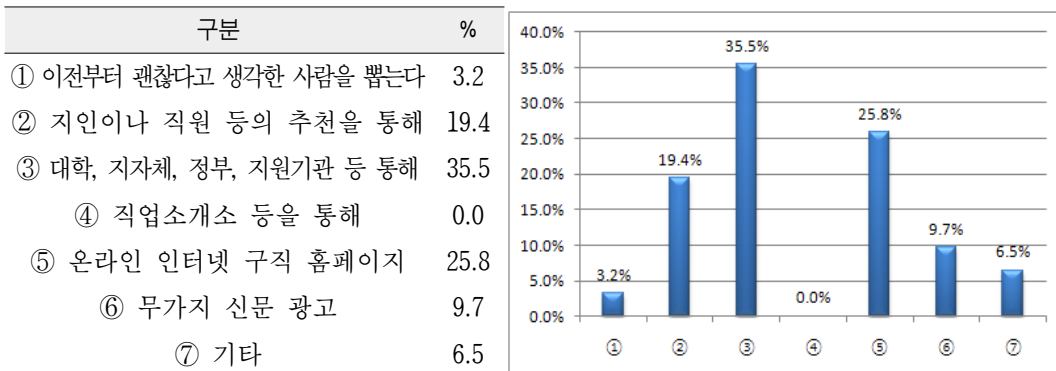
구분		총인원	남	여
(1) 유급 근로자수		320	143	141
(2) 외국인 유급 근로자 수		0	0	0
(3) 장애인 유급 근로자 수		78	47	19
(4) 기타 취약계층		77	33	34
(5) 고용형태	정규직	182	114	57
	비정규직	43	22	19
(6) 직급	관리직(팀장이상)	45	21	9
	일반직(평사원)	216	100	56

〈표 3-24〉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2~3년 이후 고용전망



- 인력채용 경로로는 대학, 지자체, 정부 지원기관을 통한 구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음이 온라인 인터넷 구직 홈페이지, 지인이나 직원의 추천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5〉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인력채용경로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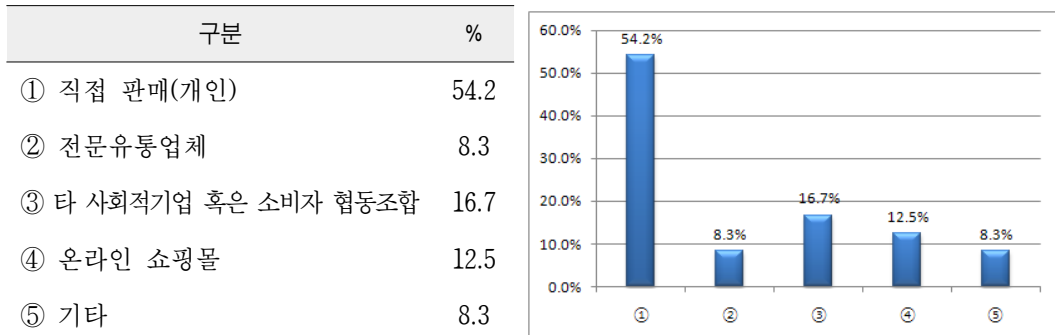
- 필요한 물품의 구입지역은 대부분이 대전시 지역내(50%)로 구입처 유형은 일반업체(63.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역주민(21%)이 일부 포함됨.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처는 대전시(46.2%)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충청권(15.4%), 수도권(23%)이 포함됨. 판매처 유형도 일반업체(30%), 지역주민(30%), 공공기관(30%) 등으로 넓게 분포함

<표 3-26>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지역 범위별 물품 구입 및 판매처

구분	구입처							판매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
(1) 대전시의 사업체	2	-	-	12	4	-	1	19	1	-	-	6	6	6	1	20
(2) 충청권에 있는 사업체	-	-	-	4	-	-	-	4	-	-	1	2	1	2	2	8
(3) 수도권 소재의 사업체	-	-	-	2	-	-	-	2	-	-	-	3	-	2	1	6
(4) 수도권외 타지역사업체	-	-	-	4	-	-	-	4	-	-	-	2	1	1	1	6
(5) 기타()	-	-	-	2	1	1	1	6	-	-	-	-	-	1	1	2
구입처/판매처 <보기>	① (예비)사회적기업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⑤ 지역주민(개인 또는 다수 설 등) ⑦ 기타 (구체적 기업 : _____)							② 마을기업 ④ 일반업체 ⑥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사회복지시 설 등)								

○ 유통망은 직접판매가 반이상을 차지하고, 타 사회적기업 혹은 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용(16.7%), 온라인 쇼핑몰(12.5)의 순임. 전문유통업체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7>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물품 또는 서비스 판매 유통망



○ 가장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대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와 자치단체(대전광역시 및 구청)로 다음이 고용노동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등으로 나타났음. 지원유형으로는 대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교육행정지원이 뚜렷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물품판매, 자금지원, 공

간지원 등은 지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는 물품판매지원과 자금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8〉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기관 및 단체의 현재 도움 유형(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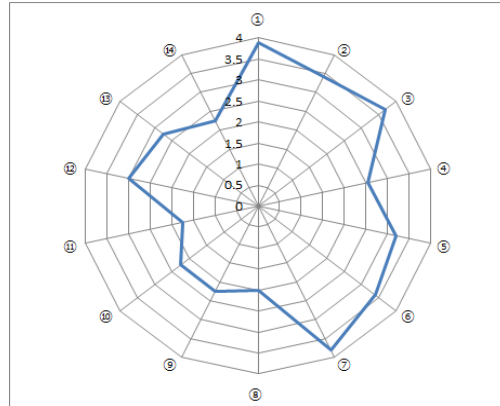
단체 및 기관 유형	도움의 유형					
	도움 없음	① 물품 판매 지원	② 자금 지원	③ 공간 지원	④ 교육 행정 지원	⑤ 기타
(1) 생활협동조합·연합회	16	1	1	-	-	-
(2) 사회복지시설·기관	10	6	-	1	1	2
(3) (지역)자원봉사센터	16	1	-	-	-	1
(4) 공공 문화·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	13	4	-	2	1	2
(5) 비영리민간단체	13	5	1	1	1	1
(6) 일반기업	11	7	-	-	-	-
(7) 대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풀뿌리 사람들)	4	3	1	1	12	3
(8) 사회적기업지원기관(대전경제통상진흥원)	9	1	-	-	8	2
(9) 고용 노동부	7	4	4	1	4	2
(10) 자치단체(대전광역시 및 각 구청)	4	7	6	2	3	2

(3) 애로사항 및 정책지원수요

- 지원받은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인건비 지원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사업개발비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교육/연수프로그램참여지원, 노무관리 지원 순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자 파견 지원과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지원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요구수준이 높은 우선구매, 금융대출, 공공구매, 마케팅판로개척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와 이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3-29〉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지원받은 지원사항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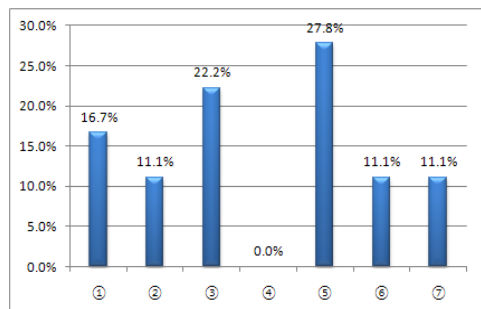
구분	만족도
① 인건비 지원	3.88
② 사회적기업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 지원	3.42
③ 경영컨설팅 지원	3.69
④ 업종 관련 전문기술 노하우 지원	2.55
⑤ 세무 및 회계업무 지원	3.20
⑥ 노무관리 지원	3.38
⑦ 사업개발비 지원	3.80
⑧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 지원	2.00
⑨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2.25
⑩ 공공구매를 통한 지원	2.25
⑪ 자원봉사자 파견 지원	1.75
⑫ 홍보 지원	3.00
⑬ 금융 대출 지원	2.75
⑭ 우선구매 지원	2.25



○ 다음 사회적기업 인증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사항으로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와 영업활동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이상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취약계층 고용비율로 나타남

〈표 3-30〉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인증신청시 장애 요인

구분	%
① 취약계층 고용비율	16.7
②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비율	11.1
③ 영업활동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22.2
④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정하는 정관, 규약을 갖추는 것	0.0
⑤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27.8
⑥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11.1
⑦ 기타	11.1



- 사회적기업 지정효과로는 공정기관의 재정 및 행정지원확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공공단체의 우선구매 효과와 체계적인 기업경영 기능이 동물로 나타남. 상품 및 서비스 매출증가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1〉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정의 효과(복수응답)

구분	%
①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증가	13.3
② 공정기관의 재정 및 행정지원확대	26.7
③ 공공단체의 우선구매 효과	16.7
④ 민간단체 및 기업의 지원	0
⑤ 체계적인 기업경영 가능	16.7
⑥ 종사자의 자긍심이 높아짐	10.0
⑦ 기타	16.7

- 사업체 운영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판로개척(시장개척)이 30.2%로 타 항목에 비해 뚜렷하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인력수급과 세금부담, 경영노하우, 사회적가치와 이윤추구라는 이중 목적 달성 부담, 설비장비 확보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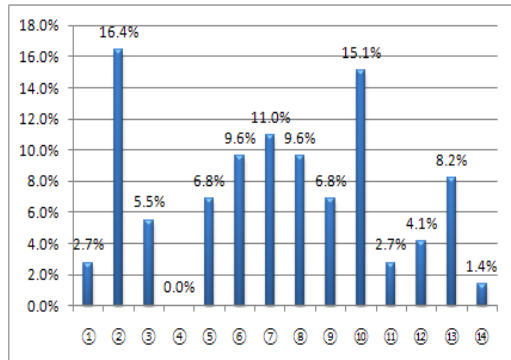
〈표 3-32〉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구분	%
① 인력수급(찾은 이직과 퇴직)	11.3
② 사업장 및 사업 공간 확보	9.4
③ 설비·장비 확보	7.5
④ 복잡한 행정절차	5.7
⑤ 법적 규제	1.9
⑥ 판로 확보 (시장개척)	30.2
⑦ 기술수준 부족	1.9
⑧ 경영노하우와 정보 부족	7.5
⑨ 근로자 사회보험금 부담	5.7
⑩ 사회적 가치와 이윤추구라는 이중 목적 달성부담	7.5
⑪ 설립 목적에 대한 근로자의 공감대 부족	0.0
⑫ 세금부담	9.4
⑬ 기타	1.9

-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에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지원에 대해 판로처 개발 등 마케팅 지원에 대한 수요(16.4%)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우선위탁 제공 등 판로확보(15.1%)에 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인건비지원 연장(11%), 사업자금 저리이용(9.6%), 세금감면(9.6%) 등 자금지원요구가 높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대(8.2%) 지원에 대한 수요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3>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지방정부(대전광역시) 혹은 중앙정부 우선 지원 사항(복수응답)

구분	%
① 사업경영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제공	2.7
② 판로처 개발 등 마케팅 지원	16.4
③ 세무와 노무, 회계에 대한 지원	5.5
④ 기술자문 및 정보 제공 지원	0.0
⑤ 저렴한 임대료의 공동작업장 지원	6.8
⑥ 사업자금 저리 이용	9.6
⑦ 인건비 지원기간 연장	11.0
⑧ 사업체 세금 감면	9.6
⑨ 근로자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	6.8
⑩ 공공기관 우선구매 우선위탁 제공	15.1
⑪ 민간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2.7
⑫ 사회적 기업이 양성 등 교육·홍보프로그램 지원	4.1
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지원	8.2
⑭ 기타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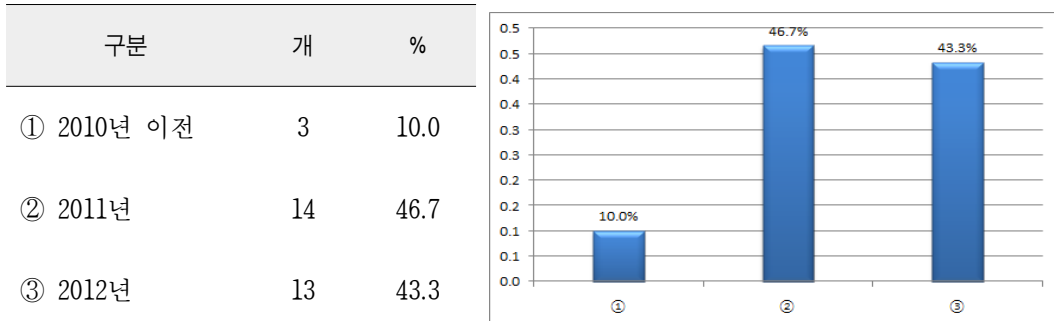


2) 예비사회적 기업의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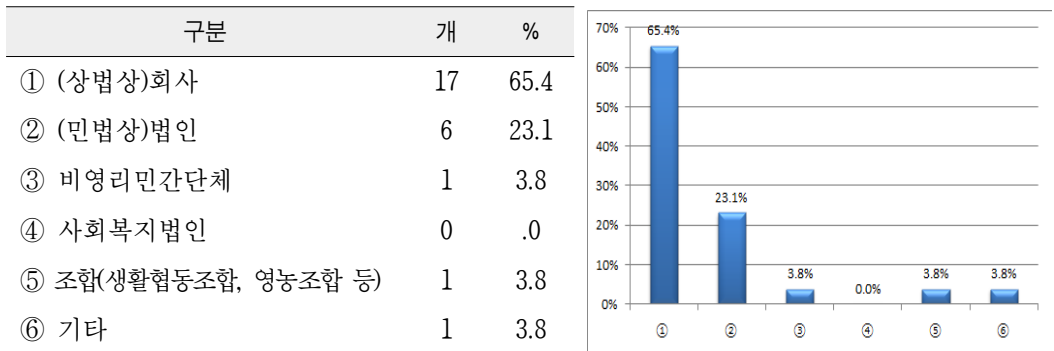
(1) 일반현황

- 금번 조사대상이 된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32개사로 인증시기는 2010년 이전 3개, 2011년 14개, 2012년 13개사임(2개사는 무응답).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가 17개로 65.4%를 차지하고 (민법상)법인이 6개사로 다음임.

〈표 3-34〉 대전시 예비사회적 기업의 인증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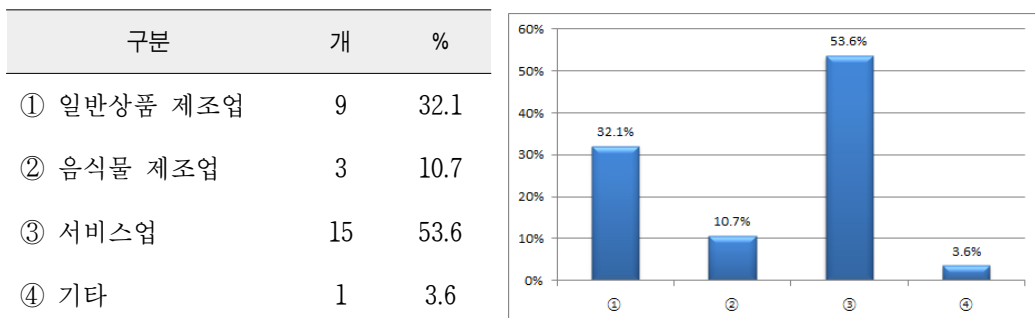
〈표 3-35〉 대전시 예비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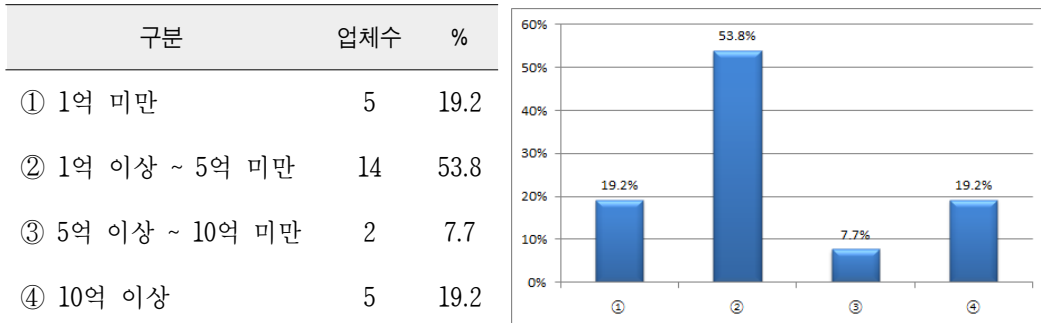
○ 주요 상품 및 서비스는 서비스업이 15개사, 일반상품 제조업이 9개사, 음식물 제조업이 3개사, 기타가 1개사임.

○ 매출액 규모는 1억이상 5억미만이 가장 많고, 종업원규모는 3~6명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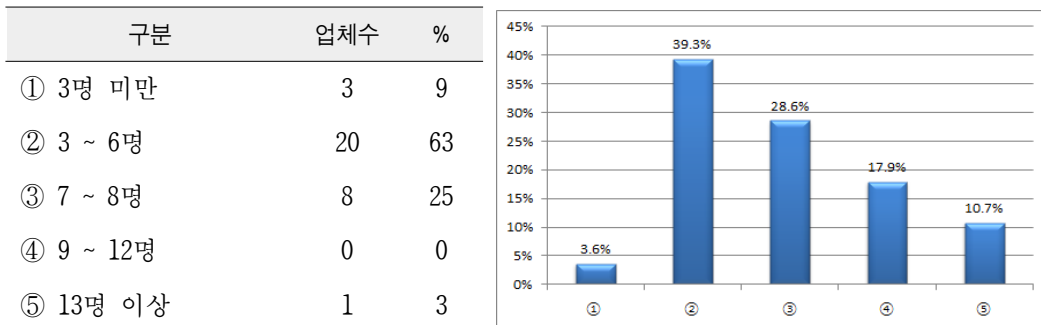
〈표 3-36〉 대전시 예비사회적 기업의 주요상품 및 서비스업



<표 3-37> 대전시 예비사회적 기업의 총매출액



<표 3-38> 대전시 예비사회적 기업의 고용인원



○ 설립년도는 아래 표와 같음. 사업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많은 20개사로 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증시에 일자리제공형이 기준을 달성하기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표 3-39〉 대전시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년도

구분	년도	업체수	비고
노동부 인증시기	1993	1	이정애 무용단
	1995	2	(주) 천지농산, (주) 시원엘에스
	1998	1	(주) 글로벌리더십센터
	2005	1	(주) 씨앤이
	2006	2	(주) 하나푸드, 대전상인연합회
	2008	1	(주) 이디엠아이
	2009	3	(주) 해밀라이트, 관저품앗이공동체, 대전충남학생복사업협동조합
	2010	5	(사) 멘토오케스트라, 대전사랑 시민협의회, 그린엔타슈, (주) 주주산업, (주) 거성종합시설관리
	2011	8	(주) 건강카페, 대전충남생태연구소, (주) 평화가익는부엌 보리와밀, (주) 다정, (주) 복사꽃사람들, (주) 용화그린, (주) 아빠손, (사) 한국흔레문화연구원
	2012	5	(주) 오렌지 크린, 아름다운세상만들기, (주) 러브아시아, 아름다운세상만들기, 디모스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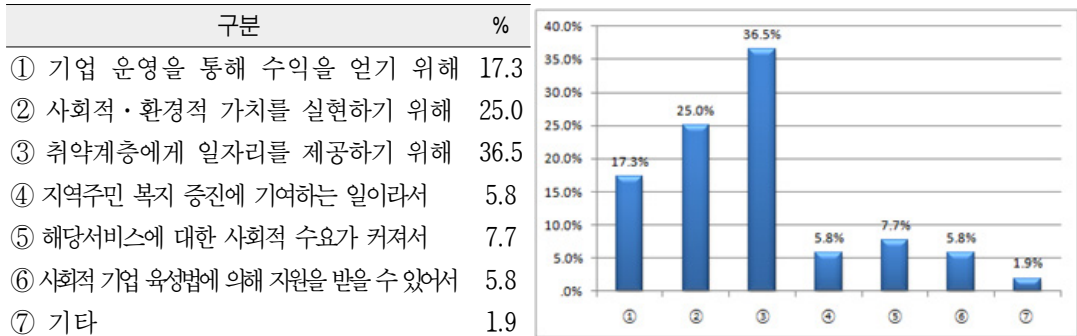
〈표 3-40〉 대전시 예비사회적 기업의 사업유형

구분	개	%
① 일자리제공형	20	71.4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2	7.1
③ 혼합형	4	14.3
④ 지역사회공헌형	2	7.1
⑤ 기타형	0	0.0

(2) 운영현황

- 사회적기업의 설립목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답변이 3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사회적·환경적 가치실현(25.0%), 기업운영을 통한 수익창출(17.3%)임.

<표 3-41> 대전시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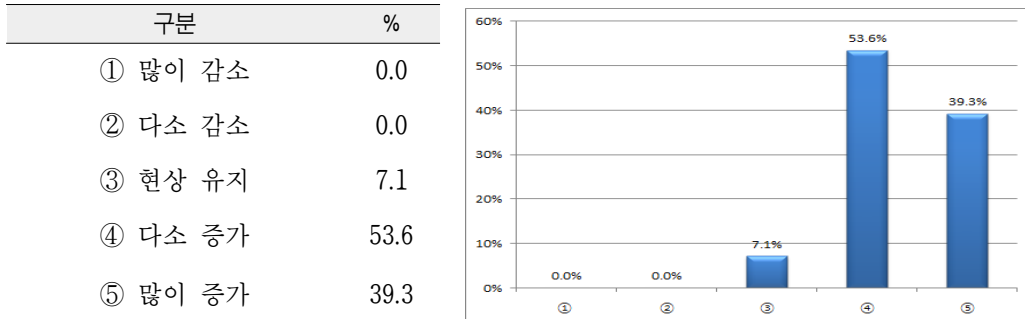
○ 고용유형은 총 유급근로자수가 178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유급 근로자 보다는 장애인(20명), 기타취약계층(95명)의 고용비율이 높게 나타남. 전체 유급근로자수와 취약계층(외국인, 장애인, 기타취약계층) 근로자수는 일치하지 않으나, 고용자의 72.5%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추정됨

<표 3-42> 대전시 예비사회적 기업의 고용유형

구분		총인원	남	여
(1) 유급 근로자수		178	108	106
(2) 외국인 유급 근로자 수		14	2	12
(3) 장애인 유급 근로자 수		20	13	5
(4) 기타 취약계층		95	40	51
(5) 고용형태	정규직	111	55	53
	비정규직	52	14	28
(6) 직급	관리직(팀장이상)	43	18	15
	일반직(평사원)	119	49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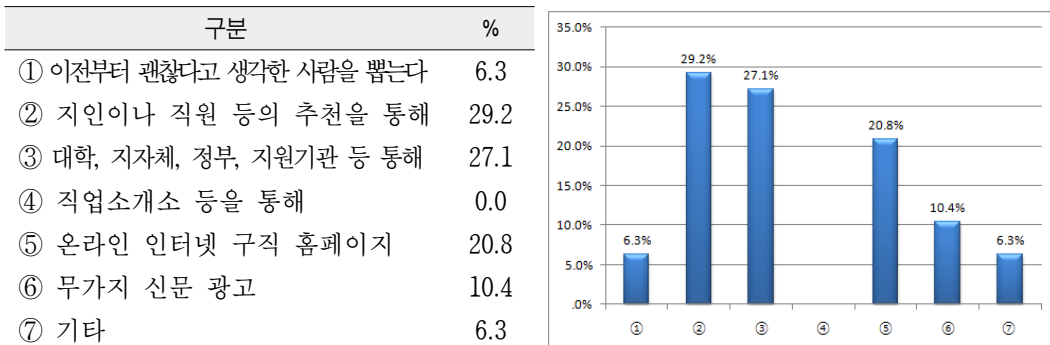
○ 향후 2-3년후의 고용에 대해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3〉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2~3년 이후 고용전망



- 인력채용 경로로는 지인이나 직원의 추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음이 대학, 지자체, 정부 지원기관, 온라인 인터넷 구직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4〉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인력채용 경로



- 필요한 물품의 구입지역은 대전시 지역내(48%), 수도권(22.6%), 충청권(16.1%)의 순임. 구입처 유형은 일반업체(65%)가 대부분을 차지함.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처는 대전시(48.2%)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구입처와 마찬가지로 충청권, 수도권 등이 일부 포함됨. 판매처 유형은 일반업체(46%)가 가장 많고 일부 지역주민(21.4%), 공공기관(21.4%) 등을 포함함

〈표 3-47〉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기관 및 단체의 현재 도움 유형(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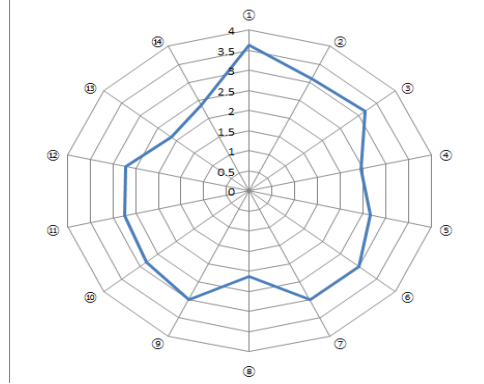
단체 및 기관 유형	도움의 유형					
	도움 없음	① 물품 판매 지원	② 자금 지원	③ 공간 지원	④ 교육 행정 지원	⑤ 기타
(1) 생활협동조합·연합회	22	3	0	0	2	2
(2) 사회복지시설·기관	21	2	0	1	1	4
(3) (지역)자원봉사센터	28	2	0	0	0	1
(4) 공공 문화·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	27	3	0	1	1	0
(5) 비영리민간단체	18	4	0	2	1	2
(6) 일반기업	21	4	0	1	0	2
(7) 대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풀뿌리 사람들)	9	1	0	0	17	4
(8) 사회적기업지원기관(대전경제통상진흥원)	10	0	1	0	14	3
(9) 고용 노동부	19	2	3	0	2	1
(10) 자치단체(대전광역시 및 각 구청)	8	2	12	1	6	1

(3) 애로사항 및 정책지원수요

- 지원받은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인건비 지원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경영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 지원, 노무관리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순으로 나타났고,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지원과 금융 대출 지원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요구수준이 높은 우선구매, 금융대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음 사회적기업 인증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사항으로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7.5%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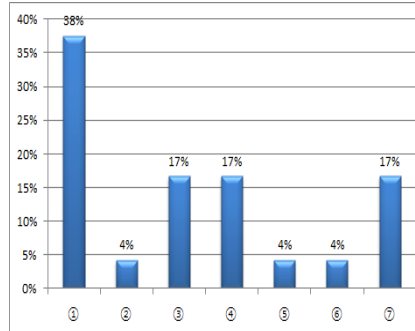
〈표 3-48〉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정 후 지원받은 지원사항별 만족도

구분	점
① 인건비 지원	3.64
② 사회적기업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 지원	3.09
③ 경영컨설팅 지원	3.19
④ 업종 관련 전문기술, 노하우 지원	2.45
⑤ 세무 및 회계업무 지원	2.67
⑥ 노무관리 지원	3.00
⑦ 사업개발비 지원	3.00
⑧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 지원	2.13
⑨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3.00
⑩ 공공구매를 통한 지원	2.83
⑪ 자원봉사자 파견 지원	2.75
⑫ 홍보 지원	2.73
⑬ 금융 대출 지원	2.14
⑭ 우선구매 지원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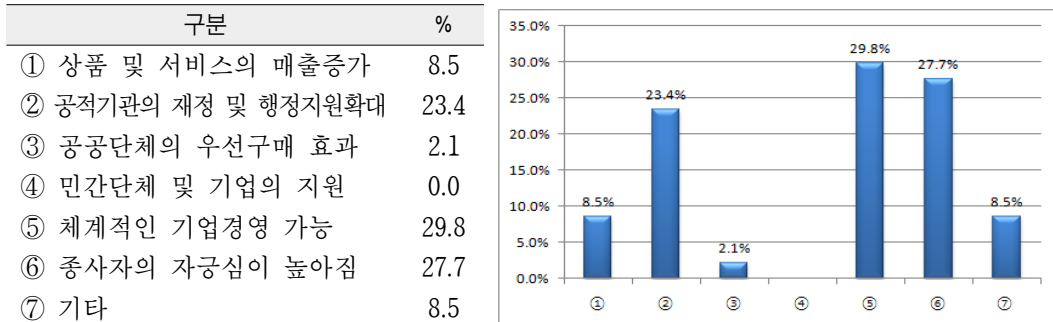
〈표 3-49〉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신청시 장애 요인

구분	%
① 취약계층 고용비율	37.5
②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비율	4.2
③ 영업활동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16.7
④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정하는 정관, 규약을 갖추는 것	16.7
⑤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4.2
⑥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4.2
⑦ 기타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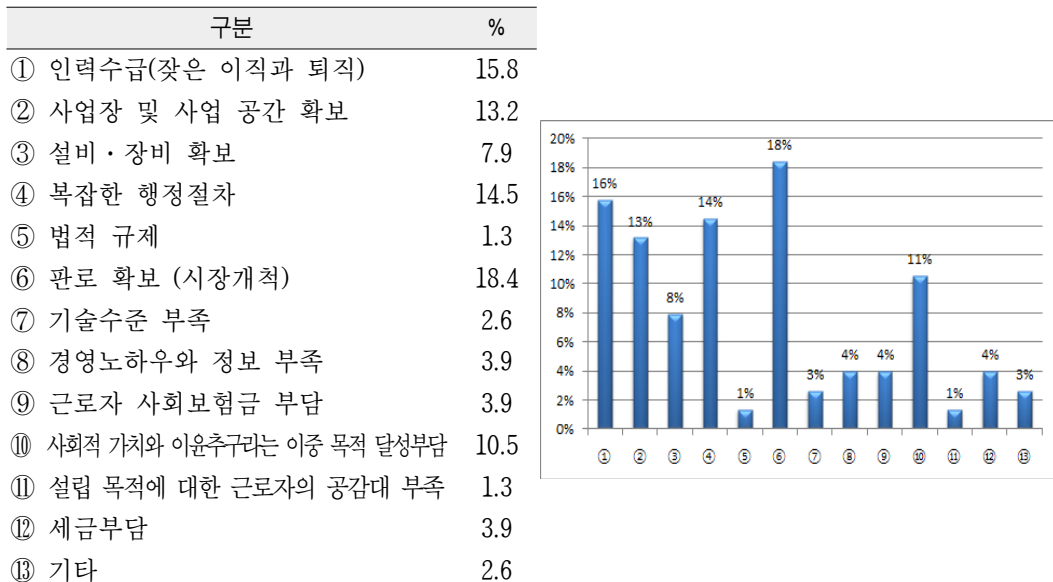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 지정효과로는 체계적인 기업경영가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종사자의 자긍심이 높아짐과 공적기관의 재정 및 행정지원확대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공공단체의 우선구매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0〉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정 효과



- 사업체 운영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판로개척(시장개척)이 18.4%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인력수급과 복잡한 행정절차, 사업장 및 사업 공간 확보, 사회적가치와 이윤추구라는 이중 목적 달성 부담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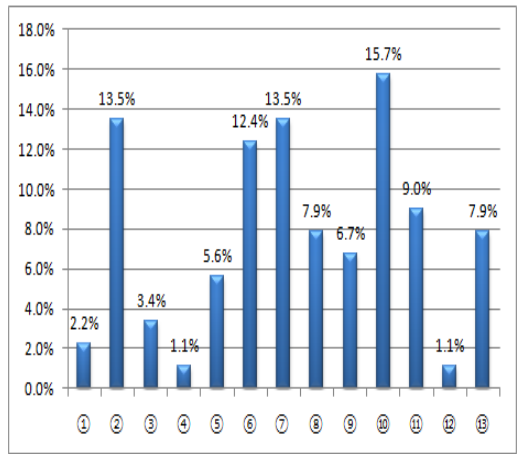
〈표 3-51〉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현재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에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지원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우선위탁 제공의 요구(15.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판로처 개발 등 마케팅 지원(13.5)에 대한 수요, 인건비 지원기간 연장(13.5), 사업자금 저리이용(12.4) 등 자금지원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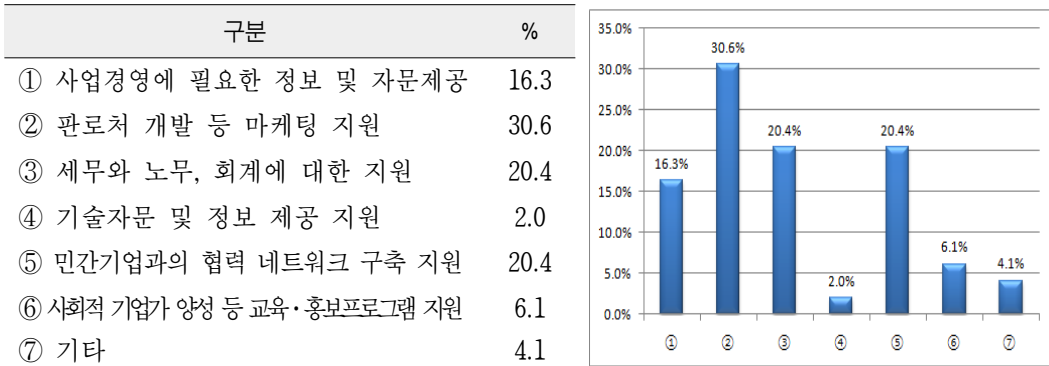
<표 3-52>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방정부(대전광역시) 혹은 중앙정부 우선 지원 사항(복수응답)

구분	%
① 사업경영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제공	2.2
② 판로처 개발 등 마케팅 지원	13.5
③ 세무와 노무, 회계에 대한 지원	3.4
④ 기술자문 및 정보 제공 지원	1.1
⑤ 저렴한 임대료의 공동작업장 지원	5.6
⑥ 사업자금 저리 이용	12.4
⑦ 인건비 지원기간 연장	13.5
⑧ 사업체 세금 감면	7.9
⑨ 근로자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	6.7
⑩ 공공기관 우선구매 우선위탁 제공	15.7
⑪ 민간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9.0
⑫ 사회적 기업가 양성 등 교육·홍보프로그램 지원	1.1
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지원	7.9



- 사회적기업지원기관(대전경제통상진흥원, 풀뿌리사람들)에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지원에 대해 판로처 개발 등 마케팅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무와 노무, 회계에 대한 지원과 민간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원이 동률로 그 다음으로 높았고, 사업경영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제공에 대한 수요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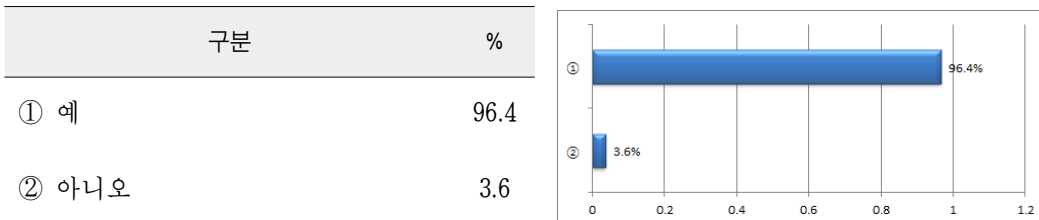
〈표 3-53〉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지원기관(대전경제통상진흥원, 풀뿌리사람들) 지원수요(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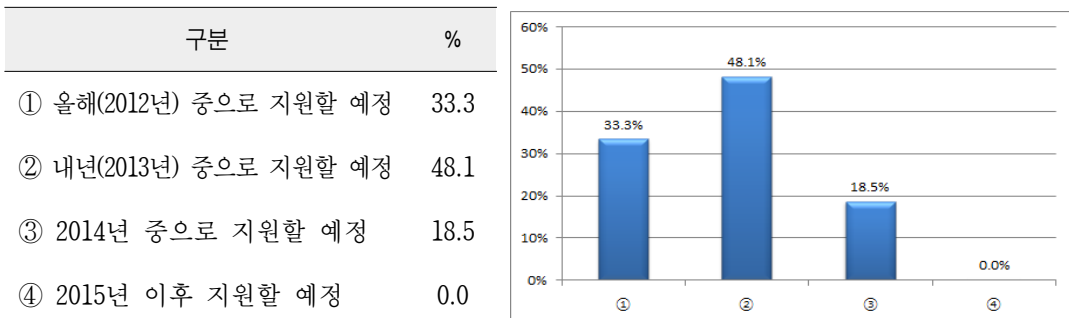
(4)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96.4%가 그럴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대부분이 내년(2013년) 중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표 3-54〉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전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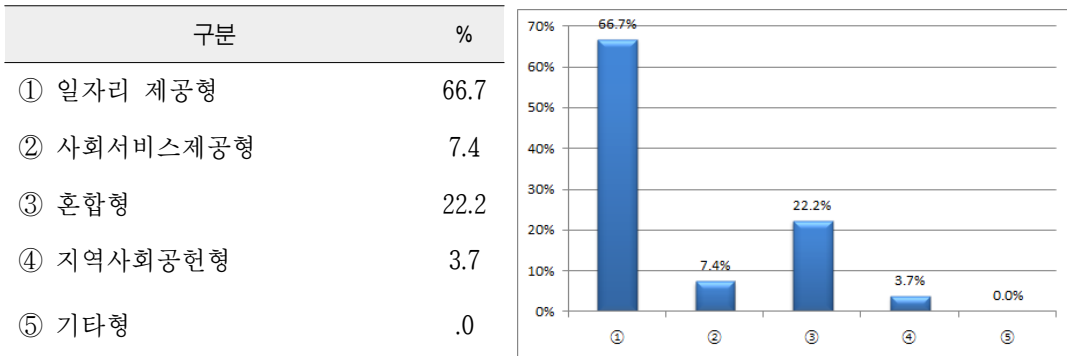


〈표 3-55〉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전환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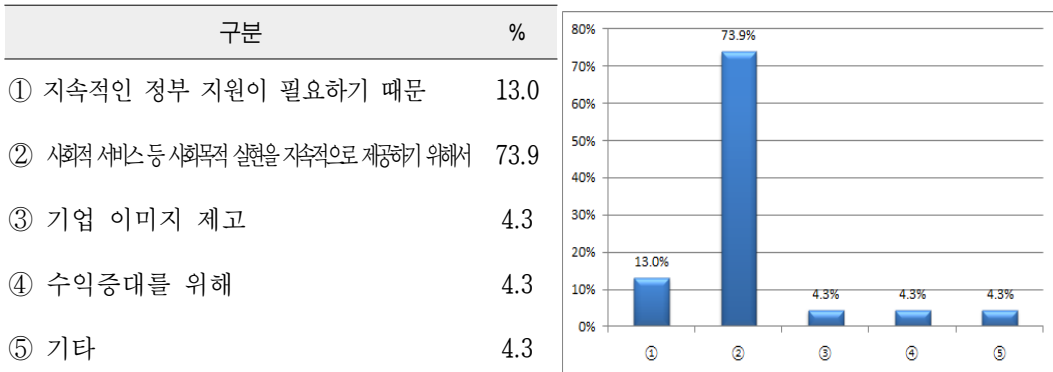


- 전환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일자리제공형이 66.7%, 혼합형이 2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기업의 전환의 이유는 사회적 서비스 등 사회적 실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남.

<표 3-56>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전환유형



<표 3-57>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전환이유



3) 소결

- 대전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상법상의 회사가 6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다만, 사회적기업에 사회복지법인이 3개사가 있는 반면,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없고 민법상 법인이 6개사가 있는 것이 특징적임
- 주요 상품 및 서비스는 사회적기업은 일반제품제조업이 많고,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서비스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1억이상 5억미만의 규모이나 사회적기업의 평균 종업원규모가 7~13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두배 정도임. 매출액을 세분화하면 매출액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유형별로는 인증시에 일자리제공형이 기준을 달성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자리제공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설립목적은 양쪽 모두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사회적·환경적 가치실현, 기업운영을 통한 수익창출로 같은 순서를 보였으나,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적 환경적 가치실현 등 공익목적이 높게 나타남
- 고용유형은 사회적기업이 외국인 유급 근로자가 없고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높는데 반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비율이 낮고 기타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외국인 유급 근로자도 일부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2-3년후의 고용전망은 매우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채용 경로는 사회적기업이 대학·지자체·정부 지원기관을 통한 구인이 가장 많고, 온라인 인터넷 구직 홈페이지나 지인·직원의 추천 등을 골고루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인이나 직원의 추천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필요한 물품의 구입지역 및 판매지역은 양쪽 모두 반 정도가 대전시 지역 내였고, 다만 구입처의 유형은 일반업체로 유사한 구조를 보였으나 판매처에 있

어 사회적기업은 일반업체,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이 유사하게 나타나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일반업체가 반 정도를 차지하여 폭이 크게 나타나, 사회적기업의 판매처 다변화가 진전된 것으로 판단됨

- 유통망은 양쪽 모두 직접판매가 반이상을 차지하나, 사회적기업은 타 사회적기업 혹은 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용이 온라인 쇼핑몰 보다 많은데 비해 예비사회적기업은 타 사회적기업 혹은 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전문유통업체의 이용은 양쪽 모두에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지원과 관련하여 양쪽 모두 대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와 자치단체(대전광역시 및 구청)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유형으로는 대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교육행정지원이, 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는 물품판매지원과 자금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치단체는 자금지원이 높게 나타나고, 물품판매지원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지원받은 사업의 만족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교육/연수프로그램참여지원, 노무관리 지원 순인데 비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 지원, 노무관리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의 순으로, 사회적기업에 비해 사업개발비 지원 부분의 만족도가 경영자문 및 판로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이 특징적임
-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요구수준이 높은 마케팅판로개척, 우선구매, 금융대출, 공공구매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음 사회적기업 인증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사항으로는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와 영업활동 수입 중 총 노무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데 비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 이미 취업고용구조가 갖추어진 사회적기업과의 차이가 드러남.

- 지정효과로는 사회적기업은 공정기관의 재정 및 행정지원확대가 가장 크고, 다음이 공공단체의 우선구매 효과인데 반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체계적인 기업 경영가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종사자의 자긍심이 높아짐으로 나타나 지원사업과 관련있는 결과가 나타남.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이 주로 자문 행정지원 등에 집중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우선구모와 인건비 지원 등 사업규모가 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체 운영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판로개척(시장개척)이 뚜렷하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판로개척(시장개척)과 함께 인력수급, 복잡한 행정절차, 사업장 및 사업 공간 확보 등의 전반에 걸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지원에 대해 양쪽 모두 판로처 개발 등 마케팅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우선위탁 제공 등 판로확보에 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적기업지원기관(대전경제통상진흥원, 풀뿌리사람들)에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지원사항 또한 판로처 개발 등 마케팅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나, 그 외에도 세무와 노무, 회계에 대한 지원과 민간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원과 사업경영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제공에 대한 수요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계획은 대다수 예비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으며 시기는 2013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환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역시 일자리제공형이 66.7%로 대다수이고, 혼합형이 22.2%의 순으로 나타남

제4장 지역별 사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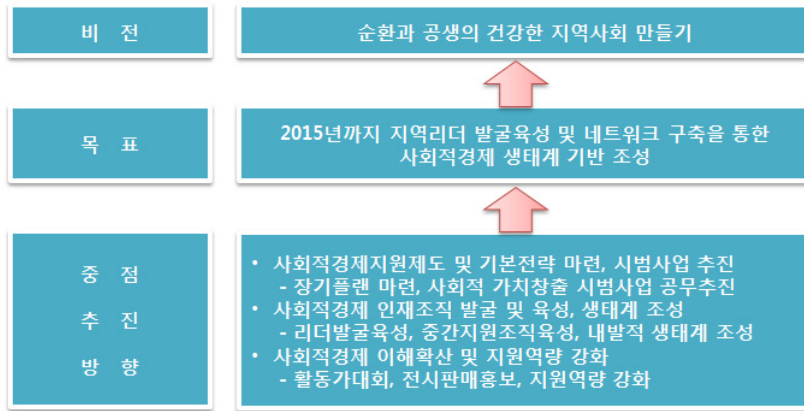
1. 충남
2. 서울
3. 영국 브리스틀시
4. 캐나다 퀘벡 지역의 사회적 경제 정책
5. 일본 오사카부 사례
6. 사례를 통한 시사점

제4장 지역별 사례 검토

1. 충남

- 충남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계획(2012)에 순환과 공생의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과제 15개 사업을 추진

〈그림 4-1〉 충남 사회적기업 육성 비전, 목표, 중점방향



〈표 4-1〉 충남 사회적경제육성 4대과제와 추진사업

추진과제	사업명
사회적경제 제도 및 기본전략 마련	충남사회적경제 5개년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 제정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사회적경제기금 조성방안 검토
사회적경제 인재·조직육성 및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권역별 중간지원조직 육성 사회적경제육성 전략기획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내부거래활성화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이해확산 및 지원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추진 사회적경제 전시판매전(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운영 충남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역량 강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활성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

- 충청남도는 2009년 4월 15일 조례 제3403호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2년 7월 6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대상을 확대함.
-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수립,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제도 기반마련을 위해 5개년계획수립, 지원조례 제정, 민관협의체 구성, 기금 조성 등을 포함
 -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으로는 아카데미 운영, 권역별 중간지원조직 설치, 전략기획사업추진, 사회적경제 내부거래활성화 등이 포함됨
 - 이해확산 및 지원역량강화사업으로는 활동가 대회, 전시판매전, 온라인쇼핑물구축, 정책지원역량 강화, 지원센터운영활성화 포함
 - 그 외에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음
- 충남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2012년도 5개년계획수립과 함께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 성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며, 다만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참조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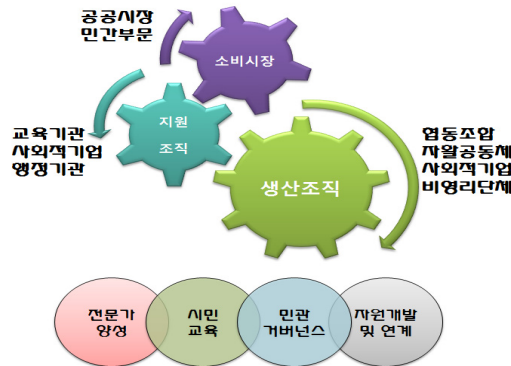
2. 서울

- 서울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종합지원계획(2011-2015)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2020년까지 사회적경제 비중 GRDP대비 2%, 전체고용 대비 8%의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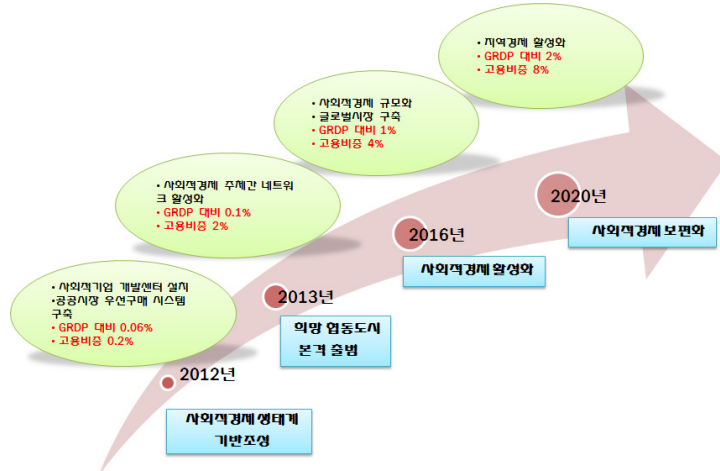
<그림 4-2>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비전, 목표, 중점분야



<그림 4-3> 사회적경제 생태계 체계도



<그림 4-4> 단계별 추진목표



<표 4-2> 4대 중점분야별 21개 핵심과제 추진

중점분야	핵심과제
체계적인 중간지원 시스템 구축	1-1 광역단위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설치 운영
	1-2 기초단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1-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1-4 창업지원 원스탑 종합서비스 기능 확충
	1-5 사회투자기금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기업 육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2-1 청년사회적 기업이 발굴 육성
	2-2 공공서비스분야 혁신형 기업 육성
	2-3 10대 전략분야 사회문제 해결형 사회적기업 육성
	2-4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강화
	2-5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2-6 사회적기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2-7 우수사회적기업 선정 육성
공공부문 소비시장 확대	3-1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목표 부여 및 달성체계 구축
	3-2 공공구매 절차 개선을 통한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3-3 소모성 물품 구매 개선을 위한 사회적기업 온라인몰 개설 운영
	3-4 공공구매 지원 센터 개설
	3-5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경영평가, 회계교육, 기업공시)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기반 구축	4-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기업 발굴 육성
	4-2 마을공동체기업 중간 지원 시스템 구축
	4-3 지역재단 설립 지원(장기과제)
	4-4 협동조합 설립 지원체계 구축

- 중간지원시스템구축 관련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설치, 지역특화사업추진, 아카데미 운영, 원스탑종합서비스 기능확충 등 사업 포함
 -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으로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 혁신형기업육성, 10대 전략분야 사회문제해결형 사회적기업 육성,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예비사회적기업 확대,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우수사회적 기업 선정 등 추진
 - 공공부문 소비 확대 관련 우선구매목표 부여, 공공구매 절차개선, 온라인몰 개설, 공공구매 지원센터, 경영교육실시 추진
 - 생태계구축을 위해 마을공동체 기업 발굴,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체계구축, 협동조합설립지원, 장기적으로 지역재단 설립지원 등을 추진
- 서울은 충남보다 공격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강구되어 있음

3. 영국 브리스틀시

-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브리스틀(Bristol)은 인구 약 44만명이 거주하나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면 100만명 이상이 상주하는 대도시임. 인구규모로 잉글랜드지역에서 여섯 번째, 영국 전체에서는 8번째 규모로 영국 남서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라 할 수 있음.
- 브리스틀 전체 경제에서 사회적경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고용의 4.6%, GDP의 4.4% 정도로 추산됨 (브리스틀 사회적경제 조사). 브리스틀의 사회적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역동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음.
- 현재 브리스틀에는 약 1,100개 이상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2억 2천만 파운드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연간 10만 파운드 미만의 수입에 10명 미만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규모 조직 중심임.
- 브리스틀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첫째, 직업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기능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사회적 기

업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둘째, 영국에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제3섹터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듯이 브리스톨 시 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제공하는 문화, 환경,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매자 역할을 수행함.
- 특히 브리스톨 지역에는 지역특성상 특히 들봄 영역이나 문화, 환경 분야에서 특히 구매자로서의 역할이 강함.
- 셋째, 브리스톨 시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공공건물 사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예컨대 브리스톨 내 Witherwood 지역에서 커뮤니티 개발 트러스트가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전에 있던 청소년 센터 건물을 제공하기도 하고, Hartcliffe 지역에서 Gatehouse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함. (김성기, 2010)
- 이처럼 지방정부의 고정자산을 커뮤니티 차원에서 소유하고 관리토록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넷째, 브리스톨 시 정부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협력체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2001년에 개시된 ‘브리스톨 사회적 경제 개발 프로젝트(SEBDP)’의 초점이 흑인, 이주민, 장애인, 여성 등 지역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에는 경제, 환경,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조직이 연계되었음.
- SEBDP는 2단계의 개발 프로그램으로, 1단계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 자원을 파악하고, 성장을 위한 잠재력과 성장의 저해요인을 파악함. 이후 사회적경제 부문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은 극대화하고 성장 저해요인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
- 전략개발조직 운영위원회에 의해 주도되며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조사 및 분석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 조사작업 (Audit)의 결과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그룹에 의해 분석되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제시

- 사회적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 및 자원 배분
- 사회적 경제 조직이 주도한 워크숍 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경제가 지역경제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공공의 인식제고를 지향함.
- SEBDP의 운영조직은 브리스톨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재생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해왔으며, 브리스톨을 넘어서 영국 남서부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 성장에도 공헌했음.

영국의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운영 현황

영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에 의해 2002년 창설된 사회적기업 발전단(Social Enterprise Unit)이 정부, 민간지원기관, 사기업 등의 사회적기업 지원 활동을 일관성 있고 통일되게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 발전단과 연계된 사회적기업의 민간 전문기관은 1) 협동조합 개발 협회(Co-operative Development Agencies), 2) 자원 봉사 위원회(Council for Voluntary Service), 3) 지역 단체 위원회(Rural Community Councils), 4) 사회적기업인 학교(School for Social Entrepreneurs), 5) 런던 사회적기업 협회(Social Enterprise London)가 존재하며 이러한 민간전문기관들은 사회적기업의 창업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관련 국가 정책을 보완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들은 사회적기업들에게 정보제공, 조언, 자문,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영역에 전문화 하고 있다.

- 1) 전문 분야 지원기관 (교육·훈련, 자원봉사 경영, 파이낸싱 등)
- 2) 특별 영역 지원기관 (육아, 노동 시장, 청년 취업 등)
- 3) 특별 단체 이익 대표 기관 (여성, 장애인, 지방, 흑인 등)

영국에서 시범 운영된 사회적기업들의 44%가 사회적기업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상공부의 직접적 지원 (mainstream business support), 공공 영역 기관, 사기업, 금융기관, 섹터별 영역 대표 기관 등의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에 의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고 있다.

영국 사회적기업 연합체 현황

사회적기업이 중요한 경제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개별 사회적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활동상황을 조사하며,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 실현에 기여하는 민간 네트워크 역시 잘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로서는 잉글랜드 지역을 기반으로 영국 전역에 걸쳐 사회적기업연합회의 역할을 하는 Social Enterprise UK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스코틀랜드, 웨일즈와 같이 영국을 구성하는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Scottish Social Enterprise Coalition, Welsh Social Enterprise Coalition 등이 조직되어 있다.

1) 영국 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UK)

2002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영국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인 영국 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Coalition)은 2011년 8월 초 Social Enterprise UK로 그 이름을 변경하였다. 해당 기관은 사회적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연합조직으로서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별 회원 기업들 및 다른 연합 조직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나 집권당에 요구하는 정책내용을 메니페스토로 정리하여 정부의 정책 및 정치 어젠다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The Social Enterprise Business Support Programme)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리더십 개발, 경영컨설팅, 각종 산업정보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한 조직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도 이 기관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영국 사회적기업연합은 지역 및 전국 사회적기업 연합체의 구심점으로써 지식공유 네트워크(knowledge-sharing network)를 조직화하고 우수한 사회적기업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사회적기업 런던(Social Enterprise London, SEL)

런던 정부 협의회(Association of London Government)의 단독 자금조달로 1998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24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기관으로 7명의 상근 직원이 있다. SEL은 런던 내 사회적기업을 홍보하여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멤버십 서비스의 제공, 훈련,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자금 접근 경로 확보에 관한 지원활동 및 런던 내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역 기업 지원 전략 개발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영컨설팅 회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들에 자문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며, 사회적기업 간 온라인 마

켓을 제공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들 사이의 상품판매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3) 스코틀랜드 사회적기업연합(Scottish Social Enterprise Coalition)

스코틀랜드 사회적기업연합 (이하 SSEC)은 스코틀랜드 사회적기업의 공동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스코틀랜드 지방 정부의 중요한 정책 파트너이다. 현재 스코틀랜드 지역의 집권당은 SNP (Scottish National Party)이며, SSEC는 집권당과 의회 등을 상대로 정책토론 및 정책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현재 SSEC 소속 회원은 스코틀랜드 지역 사회적기업 3,000여개로 추정되고, SSEC의 이사회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분야를 대표하는 1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SSEC의 주요 활동으로는 정부 자문, 우수 사회적기업 시상 및 네트워킹 회의 개최, 회보 발간, 사회적기업 지지 헌장(The Social Enterprise Charter) 국민서명,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 등이 있다. SSEC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정부보조금이 3:1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비는 회원사의 매출 등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11년 스코틀랜드 국민과 회원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국민의 71%가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회원의 95%가 SSEC 가입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회원의 73%는 SSEC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에서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9%는 회원 스스로가 적극적 기여자 또는 참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정부는 '사회적기업 성공을 위한 전략' 이라는 3개년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의 네트워크인 사회적기업연합(Social Enterprise Coalition, SEC)을 보증유한회사로 법인화하고, 협동조합그룹(Co-operative Group) 및 통상산업부(DTI, 현재는 기업통상산업부 DETI로 명칭 변경)가 설립 후 초기 3년간 재정지원토록 하고 있다. 2006년 영국정부는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로서 내각(Cabinet Office)내에 제3섹터청(Office of the Third Sector, OTS)을 설치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빅 소사이어티 프로젝트(Big Society Project)를 선언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공동체 조직화를 직접 지원하고자, 지역사회 및 지방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영역을 자선단체나 사회적기업, 민간 기업 등에게 개방하고, 주민들이 보다 지역 사회에 적극적인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의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은행들의 휴면예금을 모아 Big Society Bank를 설립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자발적 조직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까지 11개의 영국 주요 은행들이 Big Society Bank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4. 캐나다 퀘벡 지역의 사회적 경제 정책

- ‘퀘벡 협동조합과 공제협의회’ (le Conseil quebecois de la cooperation et de la mutualite CQCM)에 따르면, 퀘벡에는 3만 2,000개 협동조합과 39개의 공제조직이 있고, 850만 명에 달하는 개인 및 기업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8만 7000개의 일자리 중 60% 이상을 도심 외곽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이 제공하고 있음. 연간 매출액은 미화 220억 달러로 추정됨.

〈표 4-3〉 연차 보고서에 따른 연대협동조합 자료

(단위, 미화 1000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조합수(개)	89	97	114	130	145
자산총액	23,492	27,654	30,215	44,412	50,522
자산총액	10,577	12,242	12,763	15,464	16,080
매출총액	32,765	41,464	46,760	52,929	56,604
잉여금	1,462	658	400	307	-220
조합원수(명)	23,526	28,942	36,791	43,751	50,371
고용인원(명)	1,877	2,193	2,020	2,209	2,124

자료 : 통계자료(2007), Direction des cooperatives, MDEIE

- 1997년 6월 연대협동조합이 합법화되자 1997년 한 해 동안 23개의 연대협동조합이 설립됨. 연대협동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7년 7월 현재 479개로 집계됨.
- 퀘벡지역에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동 중이며, 역할과 규모 등에 있어 다른 나라나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비해 두드러짐.
- 먼저 1998년 설립된 노동자 연대 펀드(Workers Solidarity Fund)가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과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으로 운영됨.
- 퀘벡지역의 핵심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 가운데 하나는 전술한 샹티에임. 1998년 샹티에는 회원들을 대표해서 정부와 협상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으로 내각 상임위원회(Executive Committee of Cabinet)에서 조직되었음.

- 또한 2001년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special office for the social economy)가 재정경제개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에 설립되어, 사회적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수평적 정치 체계로 자리잡음.
- 이후 정권교체에 따라 관할부서가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샹티에에 대한 정부의 기금지원은 지속됨.
- 이러한 역사적 과정들을 통해 샹티에는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구조를 만들어 냄.
- 샹티에는 금융,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 연구개발 분야에서 자체 부서와 협력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개발 조직과 운동, 그리고 각종 산업부문을 한 데 뒤섞은 독특한 조직문화를 보유함.
- 특히 샹티에는 대학과 연계한 혁신적인 연구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또한 샹티에는 연대금융 설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퀘벡에 존재하는 많은 연대 금융기관이 샹티에에 의해 설립되었음.
 - 샹티에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을 통해 총계 7억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해 옴.
- 또하나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는 연대금융(FCES)이 있음.
 - 2007년 샹티에는 ‘Fiducie du Chantier de l’ économie sociale(FCES)’ 를 출범시켜, 5,380만 달러의 상환유예자본(patient capital) 또는 유사 주식 기금을 통해 기업이 장기 계획에 착수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며, 빚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수 있도록 하였음.
- FCES는 재정 중간지원기관으로, 초기 연방정부 보조금과 두 개의 노동 연대 펀드 Fonds de solidarité (\$12 million), FondAction (\$8 million)의 투자로 이루어졌고, 이후 퀘벡정부가 투자하였음. (\$10 million)
- 2008년 9월 기준으로 FCES는 6,200만 달러를 19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Fiducie는 2차 금융시장의 모색과 궁극적으로 연대 금융 교환을 상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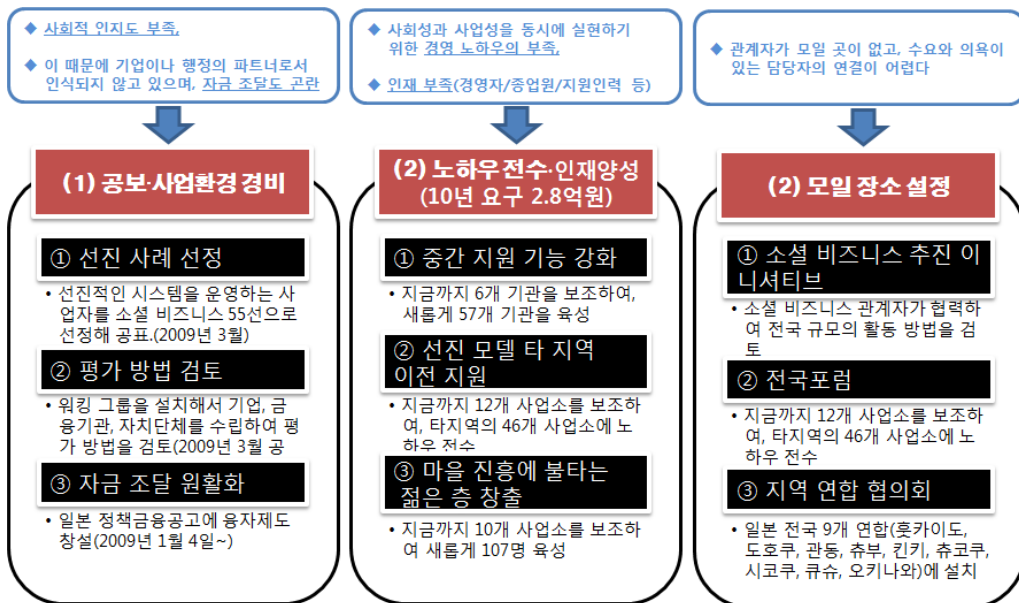
- 퀘벡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특징적인 것은 연구네트워크의 존재임.
- 연방 사회 과학 및 인간 연구 협의회(federal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가 설립한 새로운 ‘지역사회-대학 연구연맹프로그램(CURA)’이 중심점이 되어 다양한 연구관련 기관 및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 및 분석, 교육 등을 수행함.
- 이 연구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분석을 함께 제공하며, 대학강좌나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 학생이나 신진연구자의 경우 프로젝트 연구 보조로 일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직접 학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

5. 일본 오사카부 사례

- 일본은 사회적기업의 근간을 협동조합활동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찾아볼 수 있음.
- 특히 일본에서 비영리 기구를 중심으로 한 소셜 비즈니스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1970년대 경제 위기와 고령화, 고용기회의 감소,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및 농촌인구의 급감과 같은 위기 요인과 가치관의 다양화 및 시민활동의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 요인이 공존함.
- 결정적으로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형성된 자원봉사형 시민사회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비영리조직 지원에 대한 NPO법 제정, 개호보험 등 제도지원을 통한 풀뿌리 시민 영역이 발전하여 왔으며, 이와 함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 원리를 결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등장하게 됨.
- 일본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일환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임.

○ 이 때 부터 일부 지방정부들도 컨설팅, 교육훈련,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 그리고 이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 오사카부는 2003년 사회적기업가들과 이들의 네트워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오사카 사회적기업가 지원 프로그램(Osaka Social Entrepreneurs Support Programme)’ 을 시작함.

<그림 4-5> 일본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 오사카부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2003년부터 복지형 사회적기업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의 복지 과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단체’ 를 사회적기업이라 명명하였으며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을 발전시켜 왔음.

○ 오사카부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 과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2003 ~ 2004년에 시범사업으로 첫째,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

- 오사카부는 중간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에 우수한 제안을 한 단체를 선정, 600만엔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

원을 실시.

- 중간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 인재 육성, 네트워크 조성, 기금 모금의 모델 구축 등을 목표로 지원 활동을 전개
- 후에 중간지원조직에서 지원사업을 담당했던 팀이 '오사카 활력(건강) 네트워크'로 독립하여 사회적기업 중간지원 플랫폼 사업을 담당

○ 둘째, 사회적기업가 지식은행(Knowledge Bank) 사업을 추진함

- 지식은행은 전문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인재 혹은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현재 활동중인 사회적기업가에 연계하는 사업임.
- 중간 지원기관이 컨설팅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인재를 발굴, 지식은행에 등록하여 사회적기업가 및 그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연계하고, 지원 결과가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뽑아 역시 지식은행에 등록함.
- 그리하여 지식은행은 등록된 모범 사례의 프랜차이즈이나 단체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됨.
- 지식은행의 운영 역시 오카사부가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위탁공모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제 1기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보인 지원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위탁 운영하도록 함.

○ 셋째, 사회적기업가 펀드를 조성함.

- 기존에 이미 조성되어 있던 오사카부의 복지 사업 관련 기금이나 에코머니, 기부금 등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기금들을, 펀드 운용 사업을 수행하는 중간 지원기관으로 집약하여 사회적기업가 육성에 대해 우수한 단체에게 자금 제공을 중개하는 구조를 구축
- 1명의 사회적기업가(사회적기업) 당 100만엔 지원을 상한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함.

○ 2003~2004년의 시범 사업 기간을 성공적으로 거쳐, 2005년부터 시작된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

○ 첫째, 중간지원 기반 구축 사업

- 중간지원 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경험을 쌓은 사회적기업가들이 후배 사회적기업가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기관 공모를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가 간의 정보교환 및 지원자 매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가 카페 운영,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오사카부 주민과 기업 등에 홍보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협력·지원자를 확장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 등이 추진됨.

○ 둘째, 오사카부 복지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가 펀드 조성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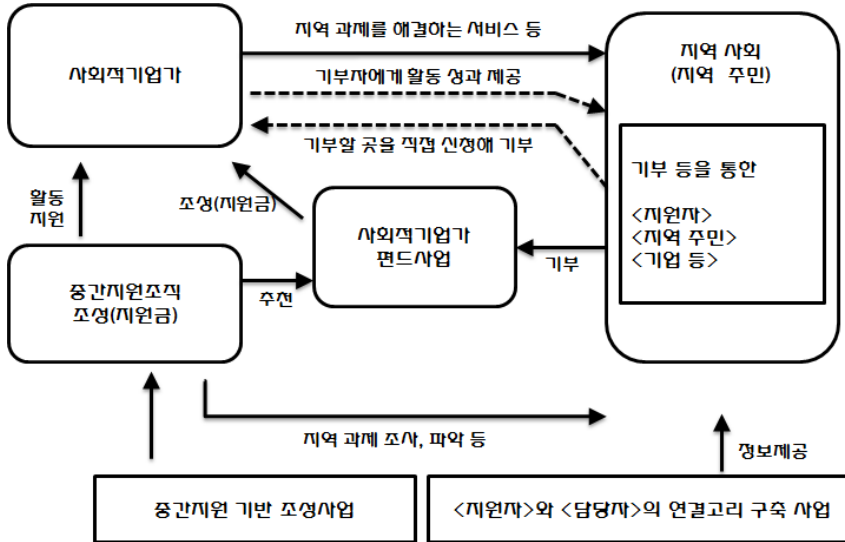
- 제 1기의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조성된 기금과 오사카부 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중간 지원기관이 추천한 초기단계의 사회적기업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명의 사회적기업가(사회적기업) 당 50만 엔(2005년 사업 시에만 100만 엔)을 상한선으로 지원

- 2009년 부터는 사회적기업가 활동에 관한 홍보, 지원기관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과 지역을 연결하는 중개기관 육성 등에 집중

○ 첫째, 사회적기업가와 지역주민(기부자)의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 연계시스템에 사회적기업가가 자발적으로 사업 내용 및 정보를 등록, 이를 기초로 지역주민이 지원하고 싶은 사회적기업가를 선정해 기부 하도록 하는 시스템임.
- 기부를 받은 사회적기업가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전개하는 동시에 기부자에게도 활동의 성과를 제공
- 이 시스템은 사회적기업가와 기부자 외에도 다양한 단체 및 조직들이 협력 체계를 구성함.
- 기부자는 개인기부자 및 지역의 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기업가와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펀드에 기부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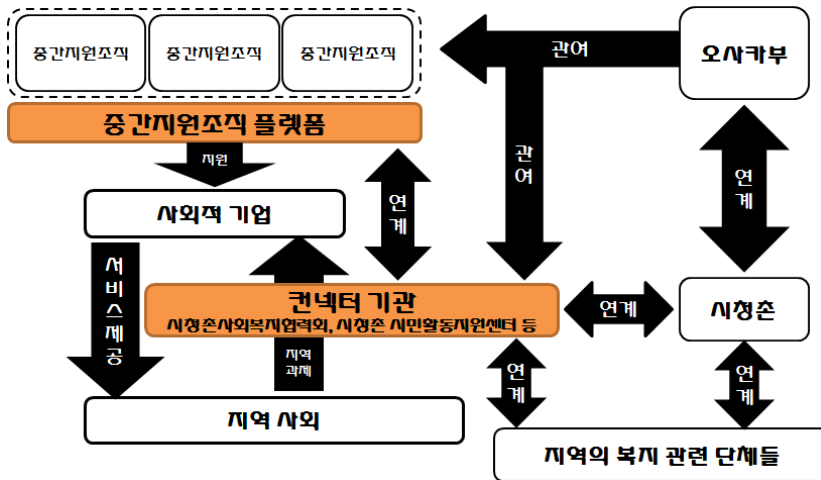
<그림 4-6>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기반 조성 사업 구상도



- 펀드 사업 운용자는 중간 지원기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가를 추천받아 기금을 지원하게 됨.
- 중간 지원기관은 기부자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대한 해결 과제, 욕구 등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이러한 것에 기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사회적기업가를 추천하게 됨.
- 기금을 지원받은 사회적기업가는 연계시스템에 등록된 사업 내용을 실제 수행하게 됨.
- 오사카부는 사회적기업가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 추진 방향을 채택함.
 -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홍보하는 포럼의 개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정·촌관련 단체와 오사카부 주민에게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에 주력
 -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간 지원기관의 플랫폼기능(정보교환이나 제휴)을 가지는 네트워크의 구축

- 사회적기업가의 사업과 지역의 복지 과제를 매칭하기 위하여 중개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역 현황, 지역 복지 과제, 주민 자원활동 현황 등을 파악해 시·정·촌의 사회복지협의회나 시민활동지원센터 등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

<그림 4-7> 오사카부의 지원기관 및 커넥터 기관을 통한 사회적기업가 지원 구상도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사카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구상에 있어 가장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지원기관 플랫폼과 중개기관(커넥터 기관)이며, 이 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특징임.
- 중개기관이 오사카부, 시·정·촌, 지역내 복지 관련 단체 등과의 연계를 담당하고 있어, 지원기관과 사회적기업가가 별도의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음.

6.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 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및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의 수립
 - 국내외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은 최소 5개년에서 20년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수립됨
 - 또한 실태조사부터 계획의 구상시에 종합적인 사업 계획의 토대 하에 지자체, 각종 지원 기관, 사회적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등을 참여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왔음.
 - 특히 오사카부는 사회적기업을 일시적인 유행이나 흐름이 아닌, 지역복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사회적기업가 지원의 기반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제 1기와, 본격적 기반 조성 및 사회적기업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 2기로 나누어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고 있음
 - 제 1기 사업 수행 초기에 실시한 다양한 시범 사업을 통해 2기에서는 정책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식을 찾는 데 성공함.

- ② 사회적기업 뿐이 아닌 사회적기업가에 초점을 맞춘 지원
 - 지역복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적기업가 혹은 예비사회적기업가를 중개기관과 연계시스템을 통해 관심있는 기업이나 시민이 직접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식이나, 중간지원기관의 추천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검증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의 현재 성과보다 향후 사회적기업가가 지역의 어떤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는 방식은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③ 지원 경험과 전문성 보유한 다양한 민간 지원기관 발굴, 활용
- 대부분의 지역사례에서 지원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다양한 민간 지원기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지원 전문기관 및 사회적기업 연합체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 연관 조직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 지원기관의 전문성이 사회적기업생태계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단체들이 중간 지원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직간접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음.
- ④ 시민적 참여기반 조성 및 다양한 지역자원 동원
- 사회적기업생태계 구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임. 오사카부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기업가의 아이디어에 대해 시민들이 기부하도록 중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던지 주류경제 전문가들이 경영자문등에 연계되도록 지역자원은행을 운영하거나 지역기금을 조성·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연계가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성장기반이 다져짐

제5장 대전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1. 기본방향
2. 5개년계획의 수립과 거버넌스의 구축
 3. 사회적 기업 시장확대
 4. Pre사회적기업 단계의 지원
 5.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체계의 정비
6.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시스템의 구축(자금조달체계 구축)
7.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기업 제도개선

제5장 대전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1. 기본방향

-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은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조사에서 드러난 제약요인을 감소시키고 필요부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다만, 구체적인 사업들은 금년도 수립되는 사회적기업육성중장기전략부분에서 다루어질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기본방향의 설정에 충실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개별 사회적기업의 판로, 자금 및 고용지원 등 육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조직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구축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시장경쟁력과 사회적목적 실현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공공재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민친화적인 사회서비스 문제를 민간의 비즈니스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하고, 해체되어 가는 가족공동체 혹은 소단위 지역공동체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며, 질 높은 고용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문제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본격화 할 때까지 정부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부분의 직접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이 가능한 생태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 따라서 개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기업 지원 인프라의 구축과 생태계 구축에 우선적 투자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첫째, 지역의 사회적기업 실태와 수요파악, 지역맞춤형 특성화된 모델의 개발 등 사회적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한 분석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임. 사회적기업육성이 활발한 영국의 사례와 같이 지역연구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를 지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사회적기업육성계획(5개년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임

둘째, 공공서비스분야의 스크리닝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담당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사업분야)을 분석하고 점진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할 것임

셋째, 예비사회적기업 혹은 마을기업 지정 이전 단계에서의 인큐베이션 기능강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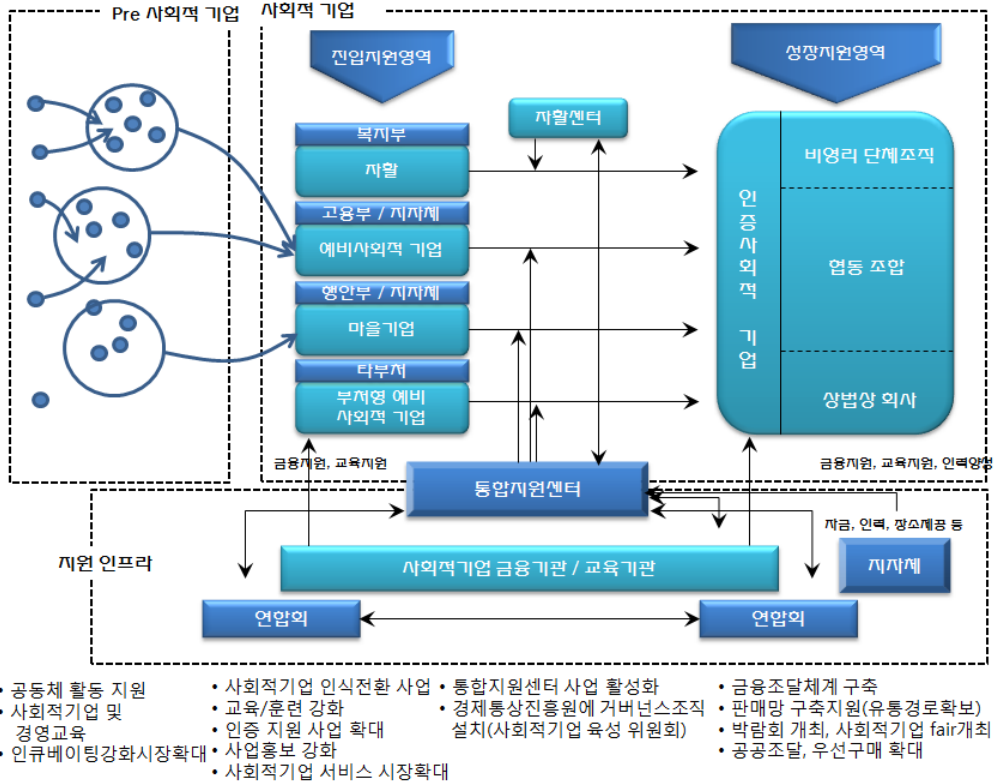
넷째, 사회적 기업지원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거버넌스체계 확보가 필요함. 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와 인증기업지원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과 사회적기업을 대표하는 자체 단체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체계를 확보하고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조달체계 구축,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선사항을 도출해야할 필요가 있음.

2. 5개년계획의 수립과 거버넌스의 구축

- 사회적기업 육성의 출발점은 지역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함. 지역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운영실태, 애로사항, 지원수요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맞춤형 특성화된 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회적기업의 실태조사는 지역연구기관, 사회적기업연합회 및 일부 대표 기업, 사회적기업지원기관, 지역내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하여 조사 중에 각종 의견교환 및 이해도 증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육성계획(5개년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임

<그림 5-1> 사회적 기업 생태계 구조



- 정책의 기획과 결정은 공공부문이 전담하고 집행의 일부를 민간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형식의 관주도 거버넌스에 대비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부문이 지원하고 참여하는 뉴거버넌스가 비용과 효과 양 측면 모두에서 우월할 수 밖에 없음.
- 정책의 기획과 결정과정, 집행과정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책수요자가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역량을 강화는 결과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과정의 투명성과 사업결과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임.
-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심의조정을 실시토록 하여 각 기관간 기능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위원회에

는 연구기관 및 지역전문가, 사회적기업 연합회 대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대표, 평생교육기관 및 지역 사회적기업 교육실시 기관, 금융기관 등이 참여토록 하여 각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 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기업지원팀, 풀뿌리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지역내 교육기관 간의 기능조정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 일반 기업 지원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적 기업 생태계 내외부간 연계 기능 강화 필요

3. 사회적 기업 시장확대

-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해주는 시장 조성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민간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만큼 우선적으로 공공시장의 수요 창출이 필요함
-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추세속에 취약계층의 소외와 배제를 방지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와 통합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의 중심과제이나, 전적으로 공공재정으로 풀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대안 실천이 이루어져야 가능함.
- 사회적기업육성은 개별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통합적인 사업의 계획과 집행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실제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음. 자활공동체,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등도 통합적 정책관점에서 조율되고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전부서의 사업과정에서 ‘사회적 경제활성화 관점’의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함. 지자체(광역시 및 자치구) 추진 사업 중 스크리닝을 통해 민간위탁이 가능사업을 추출하고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

- 민간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체 결연행사의 확대, 사회적기업 페어 및 박람회 개최 활성화, 각종 유통경로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함. 가장 우선적으로는 열악한 유통환경을 개선을 위해 온라인 마켓과 오프라인 마켓개설이 필요함.
- 온라인 마켓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온라인 마켓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지산지소 및 탄소배출량 저감측면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지역내에서 별도 구축되는 것이 타당하며, 실태조사에서도 시장이 지역내 및 인근지역으로 한정되는 점, 생산량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내 시장을 타겟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오프라인 마켓은 원도심 활성화 등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현 충남도청이전 부지 혹은 기타 원도심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저가의 임대료로 입주가능토록 지원이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인건비나 사업개발비 지원보다 판매지원사업이 생태계구축에 효과적으로 판단됨에 따라 오프라인 마켓의 구축 및 활성화 지원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핵심사업이 될 것임
- 장기적으로 오프라인 마켓과 함께, 인큐베이션센터를 입주시킨 복합건물로 구축하여 사회적기업의 사업장 확보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적기업 지원기관까지를 입주시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Pre사회적기업 단계의 지원

- 지역내의 사회적기업 인지도는 아직 짧은 역사로 인해 낮은 편이며, 관련 업계 및 학계, 일반 시민들에게 사회적기업의 역할 및 사회적 공공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아, 사회적기업 창업인력의 확산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적기업(크리티컬 매스)의 양적 확산이 필수적임.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초 기반 인프라의 구축에, 이윤추구가 아닌 지속가능한 창조정신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의 고양 등 잠재적 사회적기업 집단의 사회적기업으로 재

창출을 위한 학습과 지속적인 인적자원 역량 강화 추진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양질의 인적자원이 사회적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공동체 활성화, 인적자원 교육과 함께,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장려 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충남 서천의 경우 마을기업 전단계의 서천형 예비사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여 적은 비용으로 행안부 2개 기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효과를 계양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창업한 기업 혹은 인증 및 지정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사회적기업이 법인이 되기 전 단계, 마을기업 설립 전단계에서의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에 Pre사회적기업 인큐베이션 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5.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체계의 정비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 관련하여 현행 육성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민간단체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컨설팅을 비롯하여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음. 아울러 이러한 민간단체의 법적 자격을 명시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고 있음. 다만, 이사업이 시행초기로 민간단체의 자격요건 구비가 너무 용이하여 민간지원기관의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음.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에 의해 민간지원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함은 물론 다소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 민간단체가 난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육성법 시행령은 민간단체 중 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를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음

- 여기서 컨설턴트란 법률적인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컨설턴트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라도 3인 이상이 재직한 경영컨설팅 회사를 구성한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여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민간지원기관의 과열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 민간지원기관으로서 선정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민간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취약의 원인이 될 수 있음. 2007년 육성법 시행이후 전국에는 많은 민간지원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분야는 물론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서조차도 활동하지 않은 신생의 민간단체들이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명목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민간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탁을 위한 민간단체의 요건을 강화해야 하고 민간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민간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정방식을 사업비 위탁방식에서 민간지원기관 지정방식으로의 변경을 통해 항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행 대전시에는 시민사회단체인 풀뿌리시민운동이 통합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업무위탁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 있음. 풀뿌리 통합지원센터 이전에는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대전사회연구소에서 이를 담당하였음. 이러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시 문제가 되는 점은 위탁사업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공백 문제와, 단기간의 기관 교체로 인한 민간기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노하우의 유실 등임. 실제로 1차지원기관의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설치된 사회적기업 지원 홈페이지(대전소셜네트워크, <http://social.kmcca.net/>)가 지원기관이 바뀌게 되어 무용지물이 되는 등의 문제와 함께 축적된 노하우가 전면 소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 민간지원기관의 업무 공백을 초래한 주요 원인은 고용부로부터 위탁사업을 지정 받아 수행하기 까지 약3개월간의 민간기관 선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인증지원 등에 관한 민간지원기관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단체들인 관계로 인증지원업무 등에 대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컨설턴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물론 민간 단체를 운영할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어, 업무위탁계약 종료 후 차기 계약 시 까지 많게는 6개월부터 적게는 2-3개월까지 인건비와 단체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이 기간 동안 사실상 휴업상태이거나 소속된 컨설턴트들을 해고 또는 전직하게 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임. 단체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와 소속된 컨설턴트에 대한 고용보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전문성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움
- 사회적기업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연합체와 관련하여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는 단순한 사회적기업가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성격에 불과함.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조차도 협의회가 잘 납부되지 않는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어 사무실임차, 직원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사회적기업이 건전한 토양을 가지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들의 자생적 협의체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별도의 법적조직으로 구성하게 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대전에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회적기업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법적 조직화 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 전북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민관협력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는 전국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합체로 알려져 있음
-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는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조력하는 한편, 협의회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전라북도 또는 도교육청의 협력을 끌어내고 있음. 구체적으로,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는 올해 들어 사회적기업들에게 사무 장비 및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민관협동화 빌리지’를 마련하고 그에 입주할 사회적기업 6개 업체를 선정하는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전라북도와 함

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의류 재활용 사회적기업인 ‘나눔환경’에 전북지역 내의 학교나 임대아파트 등의 헌 옷을 독점적으로 수거하고 수익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음.
- 그 밖에도 사회적기업홈페이지 구축,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지원받아 전북대와 공동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적기업 홍보활동으로 문화 공연을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네트워크 조직인 협의체와의 공조사업은 지역 협의체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대전 지역 사회적기업 연합체 조직은 2012년 초 결성되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없이 필요한 예산의 대부분을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음. 최근에 사무국장을 상근 직원으로 채용하였음.
-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협의회나 연합회 등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가 개별 사회적기업의 정착을 위하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노하우 공유, 시장 조사 등 공동 R&D 연구 사업 진행,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에 관한 사회적기업들의 의견 형성 및 수렴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6.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시스템의 구축(자금조달체계 구축)

-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통한 인건비의 직접지원과 미소금융재단의 사회적기업 운전 및 시설자금 대부와 함께 일부 민간지원 단체의 대부 등이 있음.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을 포함시킴으로서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와 일부 대기업이 출연한 자금으로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사회적기업 지원 자본시장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금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저리의 정책자금으로는 부족한 사회적기업의 재원마련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임. 지속가능성과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의 구조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특히 사회적기업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이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를 대비할 긴급 자금의 마련통로와 함께 위급한 상황에서 보험적 성격의 공제자금 등의 조성은 현재 전무한 상태임.
-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제기금의 설치를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사업자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 또는 소상공인단체에서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 등을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공제제도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목적 가진 기업 또는 개인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지나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같은 순수한 영리목적의 기업이 아님에 따라 공제가입자격조건에서 배제되며 공제상품의 설계상 동일한 위험관리가 불가능함. 이에따라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제기금에 대해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일정 규모가 될 때까지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기업 공제는 중소기업공제기금처럼 긴급경영자금대출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노란우산공제처럼 폐업이나 노령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 사회보장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보증보험의 기능, 세제혜택, 보험혜택 등의 기능도 제도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공제금 또는 취급기관에 대한 세제상 특례조치는 근거 법률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영세한 사회적기업들이 충족하기에는 보증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급증하는 보증수요에 대비한 공동신용사업 전개 또한 필요함.
- 다만 이러한 이러한 금융체계의 개선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므로 기금모금 등의 일정부분에서만 지역이 참여하고, 금융제도의 구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의 정책적 건의가 필요함

7.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기업 제도개선

- 현행 육성법은 이 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사회적기업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육성중인 예비사회적기업, 부처별 사회적기업 등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유사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여야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임.
- 최근 정부는 「사회적기업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사회적기업들이 중소기업 수준의 금융거래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받게 하기위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입법예고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수가 많지 않는 현실에서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사회적기업을 제3의 경제영역으로 하여 부족한 사회공공서비스를 대체하는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성격의 부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는 사회적기업이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과는 사회적 목적의 수행, 의사결정과정의 특이성, 이윤 배분의 제한, 이익발생시의 사회 환원 등 영리적기업과는 그 본질이 다른 제3의 기업형태이기 때문임.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인증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인증 이후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경영컨설팅 등 육성법을 근거하여 법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인증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방식은 사회적기업가 발굴 부진, 인건비 지원 방식을 통한 직접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율성 저해,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정부가 부담해야할 사회공공서비스의 민간 전가라는 비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러한 현행의 인증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보다는 사회적기업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인큐베이팅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기법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인증이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따른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음.

참 고 문 헌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2), 외국의 사회적경제 추진동향, 제2차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자료집.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2),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제1차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자료집.
- 충남발전연구원(201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안), 중간연심회자료집.
- 이란희(2011),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연구회 제8회 워크숍 자료집.
- 김제선(2011), 마을과 일터; 세상의 중심, 대안의 뿌리!, 사회적경제연구회 제8회 워크숍 자료집.
- 김제선(2011), 사회적경제의 중간지원기관 사례연구 - 풀뿌리사람들의 사례, 사회적경제연구회 제8회 워크숍 자료집.
- 김동준(2011), 인적자원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사회적경제연구회 제9회 워크숍 자료집.
- 유정규(201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사회적경제연구회 제9회 워크숍 자료집.
- 김양중(2011), 충남 사회적경제의 여건분석, 사회적경제연구회 제10회 워크숍 자료집.
- 이은애(2011), 충남형 사회적 기업 심층사례조사 결과분석 및 제언, 사회적경제연구회 제10회 워크숍 자료집.
- 임준홍(2011), 충남사회적경제의 실태와 정책수요 분석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이식조사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연구회 제10회 워크숍 자료집.
- 김제선(2011), 충남형 사회적경제정책의 모색, 사회적경제연구회 제10회 워크숍 자료집.
- 최조순(2011),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사회적경제연구회 제10회 워크숍 자료집.
- 정선희(2010),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향후 과제, 서울경제.
- 신용석(2009), 관광분야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기본연구 2009-3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재인, 정건섭(2012), 선진국 사례를 통한 한국형 사회적 기업의 과제와 방향, 공공행정연구 제 11권 제2호, pp.49~68.
- 하익준(2009),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와 성공요인에 관한 소고, 신한 FSB 리뷰 2009년 5월호.
- 김상식, 정태길, 양동수(2011),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혜원(2010),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현황과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 김명희(2008), 영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연구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33-6, pp. 135-157.
- Aiken M.(2006), 영국의 사회적 기업, 국제노동브리프 2006년 6월, 한국노동연구원.
- 장우진(2010),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 충청북도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2010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염돈민(2010), 지역공동체사업(CB) 및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정책브리프 제81호, 강원발전연구원.
- 김경휘, 반정호(2006),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노동정책연구 2006. 제6권 제4호 pp.31~54, 한국노동연구원.

부 록



부록 1. 설문조사표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현황 및 정책수요조사

	ID			
<p>안녕하세요.</p> <p>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출연 정책연구기관으로 금번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대전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p> <p>귀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년 9월</p> <p style="text-align: center;">대전발전연구원장 이 창 기</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 : 연구위원 강영주(042-530-3567, yjkang0703@daum.net)</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원 배동수(042-530-3532, bd0083@hanmail.net)</p>				

[설문조사 작성요령]

1. 설문조사는 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주십시오.
2.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기재 사항	응답기업명	상 호 명 : _____	
		주 소 :	
	응답자	성 명 : _____	직 책 : _____
		연 락 처 : ☎ _____	
조사자	성 명 : _____		
	조사일시 : 2012년 __월 __일		

2. 귀사의 고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숫자로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총인원	남	여
(1) 유급 근로자수				
(2) 외국인 유급 근로자 수				
(3) 장애인 유급 근로자 수				
(4) 기타 취약계층				
(5) 고용형태	정 규 직			
	비정규직			
(6) 직급	관리직(팀장이상)			
	일반직(평사원)			

* 유급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인원으로 고용형태와 상관없음.

* 기타 취약계층 근로자의 유형(이후 설문에도 적용)

저소득자 : 가구월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인자

고령자 : 55세 이상인 자

장기실업자 : 실제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기타 : 새터민(탈북자), 성매매피해자, 여성가장 등

3. 귀사의 근로자 수는 향후 2~3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많이 감소	다소 감소	현상유지	다소 증가	많이 증가

4. 귀사에서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주로 누구입니까?

- ① 저소득층 여성 ② 미취업 미혼 여성
 ③ 55세이상 중·고령 여성 ④ 경력단절 여성 ⑤ 결혼이민 여성

5. 귀사가 필요한 인력은 주로 어떻게 채용하십니까? (중복체크가능)

- ① 이전부터 관철다고 생각한 사람을 뽑는다. ② 지인이나 직원 등의 추천을 통해
 ③ 대학, 지자체, 정부, 지원기관 등 통해(예 : 워크넷, 고용지원센터, 대학 홈페이지 등)
 ④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⑤ 온라인 인터넷 구직 홈페이지
 ⑥ 무가지 신문 광고 ⑦ 기타()

III. 애로사항 및 정책지원수요

※ 다음은 귀사의 정책지원 수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직접 기입하시거나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1. 사회적기업에 지정된 이후 귀 사업체가 지원받은 사항을 모두 체크(√)해주시고, 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지원 사항	만족도					
	지원 없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 인건비 지원						
(2) 사회적기업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 지원						
(3) 경영컨설팅 지원						
(4) 업종 관련 전문기술, 노하우 지원						
(5) 세무 및 회계업무 지원						
(6) 노무관리 지원						
(7) 사업개발비 지원						
(8)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 지원						
(9)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10) 공공구매를 통한 지원						
(11) 자원봉사자 파견 지원						
(12) 홍보 지원						
(13) 금융 대출 지원						
(14) 우선구매 지원						
(15) 기타(구체적 기입:)						

2. 다음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시 어떤 인증 요건이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 ① 취약계층 고용비율
- ②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비율
- ③ 영업활동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 ④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정하는 정관, 규약을 갖추는 것
- ⑤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⑥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 ⑦ 기타(구체적 기입:)

7. 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때, 여성일자리 창출에 유망한 업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항목 중 우선 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아래 항목 중 1 ~ 18에서 선택)

업종 항목	구분
① 방과 후 교실 운영 (영어, 과학, 예체능 등 특별활동교실 등) ② 특수 교육	교육
③ 보육 지원 ④ 간병 및 가사 지원	보육 및 돌봄
⑤ 정신보건 전문요원(심리치료, 중독치료 등) ⑥ 외국인 거주자 상담 및 적응지원 ⑦ 장애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 ⑧ 고령자 돌봄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⑨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재활용 가구 등 생산 ⑩ 주택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⑪ 산림 및 수자원 관리, 모니터링 ⑫ 역사 및 문화유산 해설, 문화재 보존 및 관광 안내 등 ⑬ 외국인 홈스테이 등 숙박 관련업	환경, 문화예술, 관광
⑭ 출장요리, 반찬, 도시락 등 ⑮ 유기농 농산물 가공 ⑯ 친환경 세제 등 친환경 생활소품 생산	요식업 및 식품
⑰ IT관련 업종 ⑱ 기타_____	기타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및 정책수요조사

ID			
----	--	--	--

안녕하세요.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출연 정책연구기관으로 금번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및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2년 9월

대전발전연구원장 이 창 기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

담당자 : 연구위원 강영주(042-530-3567, yjkang0703@daum.net)

연구원 배동수(042-530-3532, bd0083@hanmail.net)

[설문조사 작성요령]

1. 설문조사는 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주십시오.
2.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기재 사항	응답기업명	상 호 명 : _____	
		주 소 :	
	응답자	성 명 : _____	직 책 : _____
		연 락 처 : ☎ _____	
조사자	성 명 : _____		
	조사일시 : 2012년 ____월 ____일		

☞ I. 일반현황

※ 다음은 귀사의 일반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직접 기입하시거나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 조직

대전광역시 지정시기	년		
조직형태	① (상법상)회사 ③ 비영리민간단체 ⑤ 조합(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② (민법상)법인 ④ 사회복지법인 ⑧ 기타 (직접기입:)	
주요상품 및 서비스			
총매출액 (2011기준)	백만원		
고용인원		설립연도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공헌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제공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 II. 운영현황

※ 다음은 귀사의 운영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직접 기입하시거나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1. 귀 사업체가 설립된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기업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 ②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 ③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 ④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일이라서
- ⑤ 해당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져서
- ⑥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 ⑦ 기타 _____

2. 귀사의 고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숫자로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총인원	남	여
(1) 유급 근로자수				
(2) 외국인 유급 근로자 수				
(3) 장애인 유급 근로자 수				
(4) 기타 취약계층				
(5) 고용형태	정 규 직			
	비정규직			
(6) 직급	관리직(팀장이상)			
	일반직(평사원)			

※ 유급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인원으로 고용형태와 상관없음.

※ 기타 취약계층 근로자의 유형(이후 설문에도 적용)

저소득자 : 가구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 55세 이상인 자

장기실업자 : 실제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기타 : 새터민(탈북자), 성매매피해자, 여성가장 등

3. 귀사의 근로자 수는 향후 2~3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많이 감소	다소 감소	현상유지	다소 증가	많이 증가

4. 귀사에서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주로 누구입니까?

- ① 저소득층 여성 ② 미취업 미혼 여성
 ③ 55세이상 중고령 여성 ④ 경력단절 여성 ⑤ 결혼이민여성

5. 귀사가 필요한 인력은 주로 어떻게 채용하십니까? (중복체크가능)

- ① 이전부터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을 뽑는다. ② 지인이나 직원 등의 추천을 통해
 ③ 대학, 지자체, 정부, 지원기관 등 통해(예 : 워크넷, 고용지원센터, 대학 홈페이지 등)
 ④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⑤ 온라인 인터넷 구직 홈페이지
 ⑥ 무가지 신문 광고 ⑦ 기타()

9. 대전시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의 도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지원 기관	만족도					
	도움 없음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1) 대전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풀뿌리 사람들)						
(2) 대전경제통상진흥원(서민경제지원팀)						

 III. 애로사항 및 정책지원수요

※ 다음은 귀사의 정책지원 수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직접 기입하시거나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된 이후 귀 사업체가 지원받은 사항을 모두 체크(√)해주시고, 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지원 사항	만족도					
	지원없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 인건비 지원						
(2) 사회적기업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 지원						
(3) 경영컨설팅 지원						
(4) 업종 관련 전문기술, 노하우 지원						
(5) 세무 및 회계업무 지원						
(6) 노무관리 지원						
(7) 사업개발비 지원						
(8)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 지원						
(9)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10) 공공구매를 통한 지원						
(11) 자원봉사자 파견 지원						
(12) 홍보 지원						
(13) 금융 대출 지원						
(14) 우선구매 지원						
(15) 기타(구체적 기입:)						

2. 다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시 어떤 지정 요건이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 ① 취약계층 고용비율
- ②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비율
- ③ 영업활동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 ④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정하는 정관, 규약을 갖추는 것
- ⑤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⑥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 ⑦ 기타_____

3. 귀 업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서 기업운영에 어떤 효과를 얻었습니까?(중복체크가능)

- ①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증가 ② 공적기관의 재정 및 행정지원확대
- ③ 공공단체의 우선구매 효과 ④ 민간단체 및 기업의 지원
- ⑤ 체계적인 기업경영 가능 ⑥ 종사자의 자긍심이 높아짐
- ⑦ 기타_____

4. 귀사는 최초 (예비)사회적기업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설립목적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다. ②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4-1. 귀사가 최초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설립 목적보다 이윤을 우선 추구하게 되어서
- ② 근로자들의 설립목적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 ③ 사업아이템이 사업체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 ④ 최초 사업체의 설립 목적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서
- ⑤ 설립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경영상의 노하우 부족 때문에
- ⑥ 기타_____

5. 귀하가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인력수급(맞은 이직과 퇴직) ② 사업장 및 사업 공간 확보
- ③ 설비·장비 확보 ④ 복잡한 행정절차
- ⑤ 법적 규제 ⑥ 판로 확보 (시장개척)
- ⑦ 기술수준 부족 ⑧ 경영노하우와 정보 부족
- ⑨ 근로자 사회보험금 부담 ⑩ 사회적 가치와 이윤추구라는 이중 목적 달성 부담
- ⑪ 설립 목적에 대한 근로자의 공감대 부족 ⑫ 세금부담
- ⑬ 기타_____

6. (예비)사회적 기업을 위해 지방정부(대전광역시) 혹은 중앙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 ① 사업경영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제공
- ② 판로처 개발 등 마케팅 지원
- ③ 세무와 노무, 회계에 대한 지원
- ④ 기술자문 및 정보 제공 지원
- ⑤ 저렴한 임대료의 공동작업장 지원
- ⑥ 사업자금 저리 이용
- ⑦ 인건비 지원기간 연장
- ⑧ 사업체 세금 감면
- ⑨ 근로자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
- ⑩ 공공기관 우선구매 우선위탁 제공
- ⑪ 민간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⑫ 사회적 기업가 양성 등 교육·홍보프로그램 지원
- 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지원
- ⑭ 기타_____

7. (예비)사회적 기업을 위해 사회적기업지원기관(대전경제통상진흥원, 풀뿌리사람들)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 ① 사업경영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제공
- ② 판로처 개발 등 마케팅 지원
- ③ 세무와 노무, 회계에 대한 지원
- ④ 기술자문 및 정보 제공 지원
- ⑤ 민간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⑥ 사회적 기업가 양성 등 교육·홍보프로그램 지원
- ⑦ 기타_____

8. 여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때, 여성일자리 창출에 유망한 업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항목 중 우선 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아래 항목 중 1 ~ 18에서 선택)

업종 항목	구 분
① 방과 후 교실 운영 (영어, 과학, 예체능 등 특별활동교실 등) ② 특수 교육	교육
③ 보육 지원 ④ 간병 및 가사 지원	보육 및 돌봄
⑤ 정신보건 전문요원(심리치료, 중독치료 등) ⑥ 외국인 거주자 상담 및 적응지원 ⑦ 장애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 ⑧ 고령자 돌봄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⑨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재활용 가구 등 생산 ⑩ 주택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⑪ 산림 및 수자원 관리, 모니터링 ⑫ 역사 및 문화유산 해설, 문화재 보존 및 관광 안내 등 ⑬ 외국인 홈스테이 등 숙박 관련업	환경, 문화예술, 관광
⑭ 출장요리, 반찬, 도시락 등 ⑮ 유기농 농산물 가공 ⑯ 친환경 세제 등 친환경 생활소품 생산	요식업 및 식품
⑰ IT관련 업종 ⑱ 기타_____	기타

부록 2. 사회적기업 토론회 개최 결과

제 목: 2012 대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100분 토론 「마을·사회적기업 지원현황과 과제」

일 시: 2012. 9. 26

장 소: 대전광역시청 10층 중회의실

주 최: 대전시 경제통상진흥원

참 석: 대전시 사회적 기업, 경제통상진흥원,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등

발 표: 대전광역시 일자리추진단

발표내용:

당면과제

1. 시장경쟁력 확보 및 지속경영과제 해결
2. 마을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으로 순환구조 정착
 - 지원의 연속성을 통한 지속적 혁신활동으로 안정적 경영체계 구축 용이
3. 대전시 만의 특성화된 지원모델, 프로그램 발굴
 - 대전시 특성화 모델 발굴 등 사회적기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 전국 680개 사회적기업 중 19개(2.7%)로 작은 시장규모, 아이템 중복 등의 현상극복 방안 필요
4. 마을기업,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아이템 발굴
 - 수익모델 개발과 지역주민 참여확대를 통한 지역문제해결로 취지에 부합된 사업 추진 문제제기
5.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의 조화
 - 11년 7월 조사한 대전지역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겪는 애로사항 중 가장 많이 제시한 과제
6. 재정지원 한계에 따른 투자재원 마련
 - 인건비 지원 등 정부재정 지원 위주의 정책사업 한계 봉착
 - 기업 등 민간 참여를 통한 투자재원 확보 과제
7. 인건비 지원 종료 후 지속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과제

- 예비 및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wldenjs 종료 후 지속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과제도출 및 방안 마련

토론내용:

1. 벤처기업지원시 왜곡이 발생했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책지원 보다는 수요와 시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어느 부분을 넘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2. 사회적기업 인증이 끝나는 순간 민간기업. 과연 인증이 없으면 사회적기업이 아닌가?

참여기업 요구사항:

A사

1. 시구청 담당직원의 인사가 너무 잦음. 일관성 있는 지원과 우왕좌왕하지 않는 지원이 필요
2. 지원기관과 조사가 너무 많다.

B사

1. 의견을 조율하여 사업아이템으로 결집하기 위해서는 전담 멘토제도 필요.
2. 1사 1사 결연사업등 결연지원, 지분투자 등 필요

C사

1.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낮으므로 판로개척 지원 필요.
2. 인건비와 사업개발비간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운용

D사

1. 공동체모델인데 일자리형으로 신청한 것은 요건 및 기본인증자료가 부족하기 때문
2.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영역에 대한 정의가 모호
3. 센터. 진흥원, 시구청 등 어디에 지원을 요구할지가 모호함.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야 함

4. 원래 공동체 모델로 시작했는데, 행정절차가 어렵고,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데 전문가 접촉이 어렵다. 작은 기업은 적응이 어렵다.

E사

1. 매출부족 중에도 노인 취업을 유지하고 있음. 사업지원 항목에 융통성이 필요함. 실제필요한 것은 상품 박스제작인데, 항목이 정해져 있어 전단지 제작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음.
2. 디자인센터 등 지원 필요함
3. 참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F사

1. 대학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 중심 운영. 1인당 강사료가 낮아 강사수급 어려움. 각종 행사시 존설치, 홈페이지 장터 설치, 사회적 기업 박람회 등 개최 필요

G사

1.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의 관심 영역 확대 필요
2. 사업개발 예산 확대
3. 예비부터 인증기업까지 차곡차곡 지원

H사

1.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은 관에서 보다는 민에 가까운 조직이 되어야, 관이 주도하나 민과 함께하는 중간 지원조직 필요

부록3. 사회적경제 연구회 개최 결과

제 목: 대전사회적경제 연구회 제3차 회의

일 시: 2012. 11. 6

장 소: (사)풀뿌리사람들 교육장

참석자: 윤희숙, 김제선, 정선기, 강순규, 이원호, 이찬현, 이계석, 유승민, 강영희 구장완,
손규성, 박장동, 원용호

발제자: 강영주(대전발전연구원) -대전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과제(자료로 대체)

[사회적기업의 특징]

지원만족도: 사업개발비,노무,인건비 지원의 만족도가 높음

지원단체: 풀뿌리사람들-노동부-대전시-경제통상진흥원

인증후 효과: 재정-우선구매

설립목적실현의 어려운 이유: 재정보호

경영의 어려움: 판로확보-인력수급-설비,장비

향후 지원분야: 판로처개발-공공구매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징]

민법상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형태가 있음

고용현황: 외국인근로자가 있고, 장애인 유급근로자수는 인증에 비해 적다

고용경로: 지인이나 추천을 통해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품구입 경로: 인증에서 보이지 않던 개인과 지역의 분포가 넓다. 인증에 비해 오히려 시장의 폭이 확장되어 있다

도움받는 단체: 풀뿌리사람들(교육/행정)-자치단체(자금)

지원만족도: 재정-*교육,연수

인증신청시 장애요인: 취약계층고용비율

설립목적 실현이 어려운 이유: 설립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경영상의 노하우

[질문과 토론]

(강영희) 2013년 사회적기업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은?

(정선기) 충남 사회적경제 조례를 살펴봤을 때 모호하다. 사회적가치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 공동체를 현실적 정책에서 가능해야 한다. 사회적가치가 무엇인가? 사회적기업조례와 같은 명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계석) 사회적경제는 필요에 의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 담론이 실천적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경제를 대안으로 얘기할 때 주류가 된다고 봐야 한다. 주류가 될 수 없다면 대안이 아니다.

(정선기) 독일의 경우 시장을 인정한다. 일자리가 중요하다.

(강영주) 1.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가치 2. 다른 형태의 지원과 비교했을 때 일자리 창출 가치 3. 공동체성의 강화가 이루어진 사회적가치를 연구해보고 싶다.

(손규성) 자마니-지속가능성을 위해 외부의 전문경영가의 컨설팅과 내부의 토론을 통해 운영하는게 좋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기업경영과 협동조합 경영의 가치가 달라서 대기업이 컨설팅하기 어렵다.

자마니교수의 얘기를 통해 살펴보면 사회적가치실현을 지켜가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하지않을까? 일자리창출이 사회적가치 실현의 방법이여야 한다

(정선기)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원용호) 사회적기업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상한다는데 일반적 사회현상과 비교해보면 그렇지도 않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강영주) 자원연계에 대한 계획은?

(이원호) 사회적기업이 '팔물건도 없고, 팔데도 없다' 유통센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손규성) 유통업으로 품앗이생협이 있고, 유통센터가 필요한데 구색맞추기가 어렵다

(정선기) 지역매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찬현) 사회적기업을 통해 대전시 현황을 살펴보는 의미.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가 친편일률적인 것이 문제. 사회적기업의 애로를 계통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듯.

정책과제 2012-38

대전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2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21 팩스: 042-530-3575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 쇄 : 필성인쇄사 TEL : 042-252-1689 FAX : 042-254-168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